

# 광공업동태조사지침

1979

국통계통조사원회원기제경

# 광공업동태조사지침

1979

## — 목 차 —

1. 조사개요	3
가. 조사목적	3
나. 조사사항	3
다. 조사대상 및 단위	5
라. 조사시기	7
마. 조사방법	7
바. 집계 및 공표	7
2. 실사 및 면접	8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8
나. 실사	9
다. 유고사업체 처리	10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13
마. 면접	15
3. 조사표류 기입요령	17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17
나. 물량조사표 ( I - A ) 기입요령	18
다. 금액조사표 ( II - A ) 기입요령	31
라.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 ( III ) 기입요령	35
마. 전기업 동태조사표 ( I - B ) 기입요령	36

4. 견토 및 제출	38
· 가. 견 토	38
· 나. 제 출	39
부록 I 문제점 및 유의사항	40
부록 II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품목 분류	89
부록 III 도량형단위 환산표	151

## 1. 조사개요

###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1954년에 시작된 조사로서

- 1)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한 각종 광공업에 관한 지수를 편제하기 위  
한 자료를 수집하고
- 2) 광공업 사업체의 고용 및 급여와 투입원재료의 소비 및 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 3) 주요 품목에 대한 월별 물량 통계를 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나. 조사사항

#### 1) 조사의 종류

당원의 광공업동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사로 구분된다.

##### 가) 광공업동태조사

이 조사는 지정된 광공업사업체의 제품과 원재료중 매월 지정  
된 품목(부록 II-가, II-나참조)에 대한 생산량, 출하량, 재고량  
등의 물량을 조사 파악하는 물량조사와 생산액, 출하액, 재고액  
등의 금액으로 접근하는 금액조사로 나뉘어 진다.

금액조사를 실시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으며 그 이외의 부문은  
물량 조사한다.

##### (1) 산업세세분류 32200 · 의복제조업

(2) 산업세세분류 35220 [ 의약품제조업 ]

조사표 사용은 물량조사시에는 조사표( I - A )를 사용하며

금액 조사시는 조사표( II - A )를, 의약품 생산 사업체 조사시  
는 조사표( II - B )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액조사 대상사업체라  
하더라도 물량조사의 지정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물량조사표  
( I - A )도 함께 작성되어 「고용 및 급여」는 중복기입하여  
서는 안된다.

나) 전기업동태조사

전기업부문의 발전동태를 파악하고자 매월 전기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표( I - B )를 사용한다.

다) 광공업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금액조사에 대한 「데플레이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정품  
목의 품질규격(부록 II-다 참조)에 대한 생산자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조사표( III )를 사용한다.

2 ) 조사표 내용

가) 제품

월초재고량, 생산량, 차가소비량, 출하량(시판, 수출로 구분), 과  
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나) 원재료

원재료명 각 원재료마다 국산, 수입으로 구분하여 월초재고량,  
구입량, 차가생산량, 사용량, 과부족보정량, 월말재고량

#### 다) 고용 및 급여

피고용자(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종업원), 자영업주 및 가족  
종사자, 월말종업원수, 월중연근무인원수, 급여액

#### 라) 조업일수

#### 마) 적 요

제품 원재료, 고용 및 급여부문의 증감요인을 분석하고 출하대  
상국이나 대상처를 기입

### 다. 조사대상 및 단위

#### 1) 조사대상

이 조사의 산업상의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  
제조업 및 전기업이며 조사대상사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전  
기(前記) 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중 당원이 지정한 사업체만을 조사  
한다.

각 조사원이 담당할 조사대상 사업체는 각 조사구별 명부에 명  
시되어 있으며 조사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음.

“물”(物) 물량조사

“금”(金) 금액조사

“가”(価) 생산자 판매가격조사

#### 가) 광업 및 채석업의 정의(定義)

광업 및 채석업은 유기물 또는 무기물에 관계없이 넓은 의미  
에서 자연 그대로의 기체(석탄가스), 액체(원유), 고체(석탄

및 금속)의 광물을 채광, 채취 및 채석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또한 광석중의 혼잡물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추가활동 즉 쇄광(碎鉱), 세척(洗滌), 체질, 선광(選鉱), 용해 및 건조 등을 광산 경영업자가 하든 타 사업자가 하든 간에 포함된다.

※ 광업 및 채석활동과 연관하지 않고 경영되는 흙, 돌 및 광물의 파쇄, 분쇄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은 369(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에 포함된다.

#### 나)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것을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 작업은 동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또는 공장에서 행하여지는 집안에서 행하여지는 이를 가리지 않는다.

#### 2) 조사단위(調査単位)

조사단위는 사업체이다. 사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광 산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구역을 점거하고 그 곳에서 제품, 광물을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독립된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 가) 동일구내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1) 단일경영체에 속하는 몇 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구내에 있더라도 출근부와 임금 및 재산목록 등 경영장부를 각 공장

별로 구분하여 가지고 있으면 각각 별개의 사업체로 본다.

(2) 경영장부를 별개로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원재료 구입량, 제품 생산량 및 출하량 등을 공장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공장별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개의 사업체로 취급한다.

나)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경우

서로 떨어져서 다른 구내에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장부 또는 기록이 한군데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사업체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다) 광업사업체는 억대계인 경우 억대단위를 하나의 사업체로 본다.

#### 라. 조사시기

조사의 기준일자는 매월 말이며 조사 기준기간은 그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1개월로 한다.

#### 마. 조사방법

면접식 타계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원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사업체는 우편 조사한다.

#### 바. 집계 및 공포

제출된 조사표는 심사, 부호기입, 기계집계, 분석 등을 거쳐 산업생산 출하, 재고동향 «속보로 발간» 매월 말일까지 공표하며 구체적인 자료는 «한국통계월보» 및 «산업생산연보»에 게재 공표한다.

## 2. 실사 및 면접

###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광공업 동태조사가 잘 되고 안됨은 조사의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조사원의 노력과 조사에 대한 이해여하에 달려 있다.

이 광공업동태조사는 여타의 조사와는 달리 조사대상사업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일개 조사구가 포함하는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조사원의 보다 열의 있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또한 광공업부문의 성장이 급격하고 그 조사결과가 국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본 조사의 중요성과 사용되는 제 개념을 명백히 인식하고 모든 노력과 성의를 다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1) 조사원은 당해 조사구내에 새로 설립된 신규사업체를 색출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광공업동태조사 사업체명부에 이미 부여된 조사구 및 사업체 번호, 산업분류, 지정생신품명 등은 조사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원을 경유하여 중앙에 보고한 후 치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하였을 때에는 조사표 제품란에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

입하여야 하며 생산량 유무를 막론하고 매월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 등을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조사원은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타에 누설 시켜서는 안되며 통계법에 따라 그 비밀이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원 기록부는 사용이 다된 것은 지도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원은 반납된 조사기록부 전량을 중앙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유고사업체일지라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계속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나. 실 사

1) 광공업 동태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담당조사구내의 지정사업체를 순방하여 각종 조사표의 기입을 완료하도록 할 것이며 응답자의 부재 등 제, 사유로 인하여 조사표를 작성치 못하였거나 조사표 기입상에 잘못이 발견된 사업체는 10일~12일 사이에 재방문하여 조사표의 작성을 완료토록 한다.

2) 조사원은 별도 배부된 「조사기록부」에 다음 조사를 위하여 참고될 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하며 이 조사기록부와 기타 사항을 참고로 하여 조사의 누락이나 월초재고량 일치여부 오기 또

는 잘못된 조사가 없이 조사표가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체에서 결산지연 등의 자유에 의하여 기간내 조사표를 작성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관할지도원의 지시를 받아 전월 생산량 자료를 참고로 사업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잠정조사표를 제출한 후 그 다음 확정조사표를 제출한다.

단, 매월치연되는 사업체는 사전에 중앙에 보고하여 별도지사를 받는다.

4) 실사완료된 조사표는 재조사·지시나 질의 조회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실사 순방시 관할구역내 신규사업체 및 사업체 이동 등 변동사항을 아울러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유고사업체 처리

유고사업체라 함은 응답불응, 휴업, 폐업, 소재불명, 이전, 절업 및 명칭변경의 사업체를 말하며 각자가 담당하는 사업체 중에서 위와 같은 유고사업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1)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

응답을 거절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업체명, 거절이유 및 기타 참고사항을 별도 배포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1)

에 기재하여 그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른 지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주에게 협조를 종용하여야 한다.

#### 2) 휴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휴업인 경우에도 매월 그 사업체를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에는 미해고된 잔유종업원수, 재고품의 출하 등에 관하여 기입하고 적요란에 「휴업중」이라 명기하여 조사표를 제출하고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재가동하였을 때는 정상적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광업사업체인 경우에는 매장량과 품위를 파악하고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실적보고가 있는지 매월 확인보고하여야 한다.

#### 3) 폐업사업체

조사대상 사업체가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체명칭, 폐업일자, 폐업이유와 기타 참고자료를 «유고사업체보고서식»(1-1)에 기재하여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폐업한 월의 조사는 적요란에 «폐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며 조사증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또한 매월 그 사업체가 위치했던 곳을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요령에 의거 색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이전사업체

- 가) 조사대상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웃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에 의하여 그 이전지를 찾아내도록 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된 곳이 담당조사구 내인 경우에는 계속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첨료란에 이전이라고 명기하고 이전된 곳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제변경사항을 기입하여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자기가 담당하는 조사구외로 사업체가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월에 한하여 조사표 첨료란에 ■이전■이라 기입하여 제출하되 별도로 사업체명, 이전전 소재자, 이전후 소재지, 신구 전화번호 및 기타 참고사항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2)에 기입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대상사업체가 회계처리상의 이유로 인하여 타조사구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 또는 사업장에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본사 또는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1-2)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매월 이전된 전사업체의 소재지를 순회하여 새로운 사업체의 신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체가 신설되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체 색출보고요령에 의거하여 색출보고서를 관할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이전사업체 폐업에 대한 추가설사 치시가 있으면 즉시 그 사업체를 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사업체카드를 2매씩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 5) 소재 불명 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의 소재지가 불명한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에 (문, 의하는 등 최선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찾도록 노력하고 그해도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1)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 6) 전업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전업하여 지정된 조사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지정된 조사대상 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전업»이라 명기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 관할지도원에게 보고하고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작성 제출한다.

### 7) 명칭변경사업체

조사대상사업체가 명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조사표의 적요란에 «명칭변경»이라 기입하여 제출하고 별도로 변경전 명칭, 변경 후 명칭 및 변경일자 등을 «유고사업체 보고서식» (1-2)에 기입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한다. 또한 담당조사원 사업체명부도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 라. 신규대상사업체의 색출

광공업 동태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신규사업체를 색출 보고하여 조사대상사업체 명부를 보완한다.

### 1) 색출대상사업체

- 가) 광공업 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조사 누락되었거나 그후 신설된 사업체로서 조사대상 지정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체  
나) 광공업 통계조사(연간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사업체 중 전업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

### 2) 색출보고요령

현지 조사에서 색출하거나 또는 시·군 행정기관에 비치된 제자료에 의하여 색출하여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색출보고 서식」에 의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예비실사

신규로 색출된 사업체에 대하여 예비실사 지시를 받은 조사원은 해당 사업체의 예비실사를 완료하고 소정의 「광공업동태조사 신규사업체 예비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표 제출시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추가대상사업체

조사원은 추가대상사업체에 대한 실사지시를 받은 경우에 즉시 그 사업체를 사업체 명부에 추가하고 매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업체 카드 2매를 작성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기존사업체의 품목신규 및 품목중지

- 1) 조사원은 기존대상사업체에서 사업확장이나, 시설확장, 전업등의 이

유로 신규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신규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사업체의 조사표에 추가로 조사하고 최초조사월에는 비교란에 그 사유를 기입한다.  
그리고 별도 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속 조사한다.

2) 조사원은 기존대상사업체에서 업체사정으로 기존품목의 일부를 생산 중단할 경우는 「품목중지보고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지도원에게 보고하고 해당사업체의 조사표에는 별도지시가 있을때까지 계속 그 품목란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바. 면 접

1) 조사원은 대상사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주 또는 실무자의 면접을 요청할 때에는 당정한 용모와 품행을 유지하고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해야하여 정중한 태도로 자기 소개를 먼저 한 다음에 조사원증을 제시한다.

2) 인사가 끝나면 조사표를 제시하고 조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본 조사는 지정통계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체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비밀이 엄수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한다.

3) 대규모사업체(장부비치사업체)와 같이 즉석에서 조사하기 곤란할 때에는 본 조사표를 교부한 후 각 항목별로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4) 직접 문답식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 항목별로 연관이 되지 않고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언쟁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침착한 태도로 상

대체의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한다.

- 5) 조사원은 항상 응답자와의 원활하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여 응답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6) 응답을 거절할 경우 재심 취지를 설명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시에는 그 사업체의 대표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도 불가능할 시는 담당자도원에게 경위와 사유를 보고 지시에 따른다.

### 3. 조사표류 기입요령

#### 가. 일반적인 유의사항

조사원은 조사표의 기입에 앞서 조사항목의 정의 및 기입요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라 완전하고도 정확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 조사표는 청색 또는 흑색잉크나 볼펜을 사용하여 각 칸에 맞도록 깨끗이 작성한다.
- 2) 숫자는 반드시 1, 2, 3……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기입하며 기입한 숫자는 혼동되지 않도록 또박또박 기입한다.
- 3) 숫자 이외는 가급적 한자의 정자를 사용한다.
- 4) 규격 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구분하여 기입하고 각 품위 합량, 용량 등의 품질규격을 기입토록 한다.
- 5) 각 수량에 있어 단위 미만과 금액에 있어 천원 미만은 4자5입 하여야 한다.
- 6) 품목명 및 품목번호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7) 단위는 「지정품목 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하여야 한다.
- 8) 오기사항을 정정코자 할 때는 획선을 긋고 그 바로 위에 올바른 것을 기입하되 적색 또는 주색 잉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즉 오기된 것을 지우고 새로운 것을 기입하여서는 안되어 오기된 것에는

횡선을 그어 다음에 알아 보도록 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을 기입한다.

9) 조사표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즉석에서 의 기입이 곤란하거나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하여도 좋다.

단, 응답자에게 기입을 의뢰할 때는 조사항목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기입이 완료된 조사표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10) ※ 표가 있는 한은 기입하지 않는다.

11)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채요란에 그 증감을 자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12) 물량 및 금액란은 단위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조사표에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과 같이 자리를 미리 정해 놓았으니 이에 맞추어 기입하여야 한다.

13) 조사구번호 및 사업체번호는 사업체명부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입한다.

14) 출하대상국 또는 출하대상처를 채요란에 기입한다.

#### 나. 물량조사표(1-A) 기입요령

1) 일반적

가) 사업체명 및 소재지

(1) 사업체명이라 함은 사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말하며 이는 사업체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입한다.

예 : 「신진자동차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주식회사 동국제강 대구공장」

(2) 일정한 사업체 명칭이 없을 때는 대표자(또는 사업주)의 성명만을 기입한다.

(3) 사업체의 소재지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실제 장소를 말하여 시·도의 명칭부터 번지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입하여 다음과 같이 미리 인쇄되어 있는 해당 행정단위 명칭에 반드시 ○ 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 시 구 로동 가

전라남도 광주(시) 금남(동) 102번지의 6호

군 읍·면

(4) 사업체명 및 대표자명은 정자로 된 한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5) 전화번호란을 기록하여야 하며 누락시켜서는 안된다.

나) 본사(본점)명 및 소재지

(1) 본사가 별도로 없이 사업체와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상동」이라고만 기입한다.

(2)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사업체명 및 소재지의 기입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3) 광업의 경우 대매체를 채택하고 있는 생산은 본사 명칭 및 소재지란에 위와 같은 요령으로 위탁 생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본사 명칭란 우단에 대매라고 명기하여야 하고 광석의 판매처를 청요란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 다)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담당사업체명부에 부여된 조사구번호와 사업체번호를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고정시켜 기입한다.

#### 라) 산업분류

사업체별로 지정된 산업분류번호를 기입하되 5째자리까지 기입한다.

예 : 23010

23023

#### 2) 제품

가) 제품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원재료 또는 구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하거나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그러나 위탁자가 광업부문이 아닌 전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무역상사, 개인등인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체에서 조사한다.

나) 조사표에 기입할 품목은 그 사업체의 품목중에서 «지정품목분류표»에 기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한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원재료를 사용하여 일련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중간제품이 «지정품목분류표»에 있을 경우에만

제품으로 간주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사표에 품목을 기입하기 전에 이 «품목분류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사업체의 제품 중에서 어느 것이 조사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체의 제품이 «품목분류표»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제품의 구체적인 성질 및 용도를 알아내어 해당품목명을 기입할 것이며 그래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기입한다.

#### (1) 품목번호 및 품목명

(1) 품목번호 «지정품목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만약 한 단위만 틀려도 기계접계를 하기 때문에 결과치가 판이하게 나타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 : 004 금광석 0

005 은광석 0

(2) 품목명 «지정품목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하여 만일 제품이 동 분류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기입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예 : ×합성수지 ( ) → ○요소수지 ( )

×양은식기 ( ) → ○알미늄프레스가공식기 및 용기

×가구류 ( ) → ○ 장농

또한 사업체명부상에는 각 사업체별로 생산품목이 명시되어 있

으니 조사표 작성 시 생산량 유무를 물문하고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체에서 새로이 지정품목을 생산할 경우나 생산을

충당하였을 경우에도 그 자유를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 (4) 규격 및 단위

각 품목의 규격은 지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품목의 규격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그러나 동일명칭의 품목이라도 규격에 따라 체적 차이가 있는 것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하고 여러가지 규격품을 단일규격으로 환산 가능할 때는 단일규격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특히 광업에서는 각 광석의 품위를, 화학제조업 및 기계기구제조업에는 규격 및 용량을, 규제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각 품목의 단위는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여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상이할 때는 지정된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만약 제품명을 «지정품목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수량 단위는 «미터법»에 의하여야 한다.

#### (5) 월초재고량 (전월 말재고)

그 달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였던 제품의 재고량, 즉 전월에서 이월된 재고량을 말한다. 따라서 전월에 조사보고된 조사표상의 월말재고량과 금월의 월초재고량은 일치하여야 한다.

그 사업체에서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제품의 재고량은 그 사업체의 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

#### (6) 월중생산량

그 달 초일에서 말일까지의 1개월간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과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을 포함한다.

생산량은 전월생산량과 금월생산량으로 구분하여 주어진 단위칸에 조작조작 기입한다.

생산이란 조사기간내에 최종적인 사내검사를 완료하고 그 사업체에서 제품으로 정리된 것을 말하며 사업체에서 일단계의 생산을 하고 다시 다른 제품으로 제조되는 중간제품도 「지정품목분포」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는 생산품목으로 간주한다.

예: 어떤 방직공장에서 면사 1,000kg를 생산하고 그중 500kg를 판매하고 나머지 500kg를 가지고 다시 600m<sup>2</sup>의 광목을 생산하였다면 이 사업체의 생산량은 면사 1,000kg, 광목 600m<sup>2</sup>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생산량은 전월생산량과 금월생산량으로 구분 기입한다.

전월생산량은 기보고된 수치와 일치하여야 하며 금월생산량과 비교하여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요인을 밝혀 첨요란에 기록한다.

#### (ii) 자가소비량

그 월중에 그 사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다시 소비한 량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광목생산을 위하여 소비한 500kg의 면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위탁생산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반출된 중간제품도 여기에 포함된다.

#### (iii) 출하량(판매량 등)

(b) 출하량 (판매량 등)

그 사업체에서 실제 생산한 제품 및 타 사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 중에서 조사기간 내에 실제로 그 사업체의 소유  
를 떠난 부분의 총량을 말하며 이를 시판과 수출로 구분한다.

1) 시판은

- 즉 가) 외부에 판매한 것 (외상판매 포함)
- 나) 동일 기업체 내에서 타 사업체에 반출된 것
- 다)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 라) 그 사업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용으로 출고한 것의 합계  
량을 말하며

2) 수출은

- 가) 외국에 수출한 것
- 나) 외국에 견본 또는 선물로 증정한 것.  
의 합계량을 말한다.

(c) 과부족보정량

그 월간에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 처분된 양  
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 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량  
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의 부호로 표시하여 적요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d) 월말 재고량

그 월의 말일에 그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량을 말

한다.

수탁가공한 제품과 이미 판매되었으나 미출고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당월 말재고량 = 약월초재고량

### 3) 원재료, 연료 및 동력

원재료라 함은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한 주원료와 부부품, 부속품, 용기 등과 같은 보조원료를 말하며 이를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수입원재료라 함은 그 사업체에서 수입한 원재료는 물론 무역회사를 통한 수입원재료도 포함된다.

자기 원재료를 공급하고 위탁제조시킨 경우의 원재료는 포함시켜야 하나 타 사업체로부터 수탁생산을 맡은 경우에 타 사업체로부터 지금도 원재료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 가) 원재료번호 및 원재료명

##### (1)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분류표』 좌측에 있는 숫자를 기입한다.

제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 단위만 틀려도 기계접계의 결과가 전혀 틀리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2) 원재료명

『지정원재료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되어 만일 동분류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사업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이고 세분된 명칭을 사용하고 추후 별도 치시에 따른다.

(3) 구분란의 국산·수입은 수입원재료가 국산품이면 1, 수입품이면 2에 표시하고 만약 사업체가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할 때는 란을 텔리하여 각각 기입한다.

예: (a) 국산품만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 分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 맥		%	①	2	50	200	100

(4) 수입품만 사용하는 경우

소 맥		%	1	②	20	100	
-----	--	---	---	---	----	-----	--

(5) 국산품과 수입품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규격	단위	구 分		월초재고량	구입량	자가생산량
			국산	수입			
소 맥		%	①	2	50	200	100
소 맥		%	1	②	20	100	

나) 규격 및 단위

(1) 규격

원재료에 대한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각 원재료의

규격을 그대로 적는다. 단, 동일명칭의 원재료라도 현저한 규격의 차이가 있으면 규격별로 기입하여 단일규격으로 환산이 가능할 때는 이를 환산하여 기입한다.

## (2) 단위

각 원재료의 단위는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지정된 단위를 사용하되 이것이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단위와 다를 때는 「지정단위」로 환산한다. 만약, 원재료명을 「지정원재료분류표」에서 찾지 못하여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그 수량의 단위를 「미터법」에 의하여 기입한다.

### 다) 월초재고량(전월 말재고량)

그 월의 초일에 그 사업체가 보유하였던 원재료의 량을 말한다.

### 라) 구입량

그 월중에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현금 또는 의상으로 구입한 량을 말하며 동일 기업의 타 사업체로 부터의 반입량도 여기에 포함된다.

### 마) 자가생산량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중간제품을 말한다.

### 바) 사용량

광산품 및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그 월간에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량(제품란의 자가소비량도 여기에 포함됨)을 말하며 위탁생을 위하여 타 사업체에 공급한 량도 포함한다.

### 사) 과부족보정량(過不足補正量)

「제품」에서의 「과부족보정량」에 준하여, 구입한 원재료 및 자

가생 산원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호를 붙여서 기입하고  
제요란에 「판매」라고 그 자유를 밝혀야 한다.

#### 아) 월말재고량

제품에서의 「월말재고량」에 준한다.

자) 경유, 중유, B-C유, 무연탄의 사용량 중 연료나 동력으로 사용한 양은 연료 및 동력란에, 원재료로 사용한 양은 원재료란에 기입한다.

#### 4) 고용 및 급여

##### 가) 피고용자(被雇傭者)

① 피고용자라 함은 일정한 산정기준에 의하여 임금이나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급여를 받는 모든 남여 종업원을 말한다.

② 피고용자에는 상용(常用), 임시 및 일고(日雇)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장기 결근자 군복무자는 제외시킨다. 또한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 수탁(受託)업체의 종업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피고용자는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1) 생산종업원

제품 또는 광산물의 생산에 직접 관련있는 현장종업원 또는 보조적인 작업에 종사하는 보조원을 말한다.

현장에서 일하더라도 실제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사무원, 지배인, 중역 등은 생산종업원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제조업의 경우

제조(製造), 가공(加工), 검사(検査), 검량(検量), 입하(入荷), 저장(貯藏), 조작(操作), 포장(包装), 입고(入庫), 출하(出荷), 보수(補修) 등의 업무와 보조적인 생산품의 생산 업무, 생산과정의 기록사무 기타 장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생산종업원이다.

(2) 광공업의 경우

채광(採鉱), 굴진(掘進), 쟁내지주(坑内支主), 권양(邊揚), 환기(換氣), 배수(排水), 철공(穿孔), 발파(發破), 분쇄(粉碎), 선광(選鉱), 검사(検査), 저장(貯藏), 출하(出荷), 보전(保全) 등의 업무와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무 및 기타종업원

생산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를 말하는 것으로 생산업에 직접 관련하지 않고 뒤에서 기술적, 전문적 그리고 서기적(書記的)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이들의 보조원, 즉 급사, 수위, 승용차의 운전사, 판매 및 선전을 위한 자동차의 운전사들을 말하며 인사, 기획, 경리, 선전, 판매, 배달 등 실체적으로 육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 종업원을 말한다. 그리고 보수를 받는 차배인, 충역 등도 이에 포함한다.

나)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 종사자

(1) 「자영업주」란 사업체의 주인으로서 급여를 받지 않으며 실체

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자영업주와 가족관계가 있는 자로 사업체의 업무에 무급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주당 24시간이상 종사한 자에 한함)

다) 월말종업원수

그 월말 현재의 그 사업체 종업원수를 말한다. 만약 월말 현재로 조사가 곤란할 때에는 그 월말에 가장 가까운 급여계산 일을 기준한 종업원수를 기입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일교종업원의 일별근무인원이 현저한 차이를 보일 때에는 월중조업일의 평균인원을 기입한다.

라) 월중연근무인원수 (月中延勤務人員數)

그 월중에 실제로 근무한 종업원의 연 인원수, 다시 말하면 일별근무인원 (日別勤務人員)의 월중누계를 말한다.

예 : 월중조업일수를 26일이라 하고 처음 10일간에 15명씩 그 리고 다음 6일간에 20명씩, 나머지 10일간에 25명씩 근 무하였다면 월중연근무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15\text{명} \times 10\text{일} + 20\text{명} \times 6\text{일} + 25\text{명} \times 10\text{일} = 520\text{명}$$

마) 조업일수

그 사업체가 월중에 실제로 생산활동을 영위한 일수를 말한다.

1일 24시간을 교대로 작업을 계속하였어도 조업일수는 1일로 계산한다.

5) 척      요

### 가) 생산 출하 및 원재료 증감요인

제품의 생산, 출하, 재고량과 원재료 등이 전월과 비교하여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기입되지 않은 것은 지도원이 접수시 "체크"하여 반려토록 되어 있으니 조사표 작성시 증감 여하에 관한 요인을 기입하여야 한다.

예 : 시설보수로 인한 조업단축 ( 10일 ~ 15일 까지 )

수출수요 증대 ( 미국, 카나다 )

관납증대 ( 농협, 철도청 )

건축비수기 등

### 나) 고용 및 급여 증감요인

고용 및 급여에 대하여서도 종업원 및 급여액에 차이가 심하면 증감요인을 밝혀 기입하여야 한다.

예 : 종업원수 증가는 임시종업원 ○○명 증가, 급여액 증가는 능률 급, 지급, 보너스 ( ) % 지급, 정기 ( ) % 승급, 특별시간의 수당지급 등

다) 광업사업체는 광산물의 판매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라) 기타 참고사항

휴업, 폐업, 이전, 소재불명 등의 유고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 다. 금액조사표 ( II - A ) 기입요령

#### 1) 제품

### 가) 완제품

구입원재료 또는 자가생산원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생산한 최종 제품과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에 공급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조공정 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의 수탁제조 및 수리수입액에 포함된다.

### 나) 수탁제조 또는 수리수입액

수탁제조 수입액은 원재료 또는 반제품을 타 사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제조 또는 가공하여 주고 그 월중에 기성고분(既成高分)에 대하여 받은 수입액(미수금을 포함)을 기입한다.

그리고 수리수입액이라 함은 타인의 소유물을 수리하여 주고 받는 수입액(미수금 포함)을 말하며 제조공정상에서 생긴 부산물이나 폐품 등을 포함한다.

### 다) 월초제품고액(전월말 제품재고액)

그 월의 초일에 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완제품 및 기타 부산물, 폐품 등의 재고액을 말하며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단, 장부가격이 없거나 원가의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의 미출고분(未出庫分)은 재고로 보지 않으며 또한 수탁생산(受託生產)한 제품은 수탁사업체의 재고액에서 제외된다.

월초재고액 = 전월말재고액

### 라) 월중생산액

해당월의 초일에서 말일까지 그 사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것과

타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위탁생산한 제품액을 포함한다.  
월중생산액은 사업체에서 조사가 곤란한 경우는 다음 산식을 적용  
하여 생산액을 환산해서 기입할것. (의복류와 의약품)  
『월중생산액 = 출하액 (시판액 + 수출액) - 파부족보정액 + 월말재고액  
- 월초재고액』

#### 마) 출하액

##### (1) 시판

그 사업체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위탁 생산한 모든 제품에 대  
한 그 월중의 판매액을 말하여 위탁판매 및 외상판매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동일기업체내의 타 사업체에 반출한 것, 전분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 그 사업체 내에서 사무용 또는 급여  
용으로 직접 소비한 것도 환산평가하여 포함한다.

반면에 구입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상대로 재판매하였거나 수탁  
생산한 제품의 판매는 그 사업체의 출하로 보지 않는다.

출하제품의 평가는 공장인도 (광산들은 최근역도 (最近駅渡))가격에  
의하여 물품세 부과대상품인 경우에는 동 세금을 포함하는 가격  
으로 한다.

##### (2) 수출

수출한 제품은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  
하여야 한다.

#### 바) 월말 재고액

사업체가 그 월의 말일에 보유하고 있는 원제품 및 기타의 재  
고액을 말하여 평가는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한다.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사) 과부족보정액

그 월간 화재, 도난 등의 재난에 의하여 결손처분된 액과 재물조사시 발견한 증감액을 말하며 판매한 제품중 반송 등에 의하여 발생한 증감액도 이에 포함된다.  
증감은 「+」·「-」기호로 표시한 금액을 기재하고 체요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원재료, 연료 및 동력

물량조사표(1-A)의 원재료, 연료 및 동력란 기입요령에 준한다.

3)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표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다만 한 사업체에서 물량조사와 금액조사를 동시에 작성할 경우에는 고용 및 급여 통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금액조사에서는 조사치 않고 물량조사표에만 조사 기입한다.

4) 체요

물량조사표 체요란 기입요령에 준한다.

라.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표 (Ⅲ) 기입요령

1) 조사대상품목 및 사업체

광공업 생산자판매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에 게재된 품목에 대하여 조사한다.

그리고 각 사업체에서 조사하여야 할 품목은 별책 «사업체별조사 대상품목표»에 지정되어 있다.

2) 품목번호 및 품목명

품목번호와 품목명은 별책 «사업체별조사품목표» 및 «가격조사 지정품목일람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3) 품질규격 및 단위

«사업체별 조사 품목표» 및 «가격조사지정품목일람표»에 지정된 품질규격 및 단위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품질 규격 및 수량 단위를 기입한다.

4) 판매가격

판매가격은 공장인도가격(평신은 최근 역도가격)으로서 용기 포장을 요하는 품목은 그 비용을 포함하고 물품세 또는 유류세의 부과 대상인 품목인 것은 동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5) 평균가격의 계산방법

가격은 그 월의 월중 평균판매가격, 즉 지정품질규격에 대한 그 월중의 일별판매가격의 월평균가격으로 한다.

수출품목일 때는 F.O.B가격으로 하되 조사표상의 원화표시를 지우고 미불로 기입하여야 한다.

#### 6) 조사표 작성상의 유의사항

가) 조사기준일( 1 월분 ) 조사구 및 산업분류( 지정품목 일람표 참조 ) 등의 기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이 조사는 지정된 품질 및 규격에 의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품질 및 규격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다) 지정된 수량 단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라) 수출품일 때는 미불가격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마) 조사표상 전월 가격란에 기입된 가격은 전월에 보고된 가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바) 전월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의 등락(騰落)이 있을 경우에는 등락사유를 «적요»란에 기입한다.

#### 마. 전기업동태조사표( I - B ) 기입요령

##### 1) 발전량

가) 총발전량

그 월중에 발전한 총발전량을 각 시도별로 기입한다.

나) 각가소비전력량

각 발전소가 그 월중에 발전을 위하여 소비한 전력량으로서 본사, 지점 및 각 영업소의 소비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순발전량

총발전량에서 자가소비전력량을 차감한 전력량을 말한다.

2) 종합손실전력량

각 단체의 충전 및 배전 과정에 생기는 손실 전력량의 총계를 말한다.

3) 수용전력량

그 월중에 판매한 수요 부문별, 전력량을 기입한다.

가정용은 일반 가정에 공급한 전력량이며 산업용은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산업(서비스, 전철 등) 별로 공급한 전력량을 기입하고 기타는 관, 군, UⅡ군, 사업자용(한전 사업소) 등에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4) 고용 및 급여

물량조사의 「고용 및 급여」에 준한다.

## 4. 검 토 및 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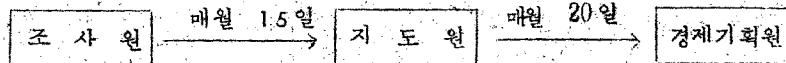
### 가. 검 토

접수된 조사표가 질의조회나 제조사 지시를 받지 않도록 다음 내용을 검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1) 조사기준일(년 월분), 조사구 및 사업체번호 산업분류번호 등의 기입누락 여부.
- 2) 제품의 단위에 있어서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 수량단위의 사용여부.
- 3) 품목명 및 품목번호가 «지정품목분류표»에 지정된대로 기입되었으며 사업체명부상에 지정된 생산품목 누락 여부.
- 4) 월중의 생산량과 원재료사용량의 합리성 여부.
- 5) 전월말재고(이미 제출된 조사표에 기재된 것)와 금월초재고의 일치여부.
- 6) 「월초재고량+월중생산량-자가소비량-출하량(시판량+수출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 7) 원재료명 원재료번호 및 단위가 «지정원재료분류표»에 의하여 기입되었는지의 여부.
- 8) 원재료에 대하여 「월초재고량+월중 구입량+자가생산량-월중사용량±과부족보정량=월말재고량」의 성립 여부 및 국산(1)이나 수입(2)의 구분 표시 여부.
- 9) 월중의 생산량과 고용 및 급여란의 종업원수와의 타당성 여부.

- 10) 조사된 숫자의 증감이 전월과 비교하여 심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적요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 11) 기타 기입사항의 오기 또는 누락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나. 제출



- 1) 조사원이 직접 답사하면서 배부한 조사표는 늦어도 실사기간 최종 일 까지 그 전부를 회수하되 개개의 조사표 오기 누락 등이 없는 가를 「조사표검토요령」에 의거 검토한 후 불완전한 점이 있으면 즉시 재 조사하여야 한다.
- 2) 매 실사월의 조사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5매 내지 10매씩 분활하여 제출하되 늦어도 그 달의 15일 까지는 담당조사표 전부가 지도원에게 필자토록 하여야 한다.
- 3) 지도원은 내검된 조사표를 13일부터 매일균등하게 발송하여 20일까지 중앙에 필자토록 할것이며 18일 이후에는 속달우편으로 송부할 것.
- 4)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조사표 회수가 늦어지면 지역 사무서를 조사원은 담당지도원에게 지도원은 중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록 I : 문제점 및 유의사항

### 일반적인 사항

이 문제점 및 유의사항은 동안 광공업동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어나는 제 문제점과 실사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요점을 수록한 것으로서 본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반드시 숙지하고 임해야 하며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점과 조사질의나 재조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계집계로 전환함에 따라서 해당사업체의 지정품목은 계절에 따라 생산이 없거나 주문이 없어서 생산이 없을지라도 품목번호, 품목명 단위를 매월 보고한다. 단, 사업체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성이 도저히 없을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사중지를 받을 수 있다.

(2) 광업, 화학, 기계제조업, 섬유 등은 각 품위, 함량, 용량, 비율 등의 품질, 규격을 기입토록 한다.

또한, 동일 명칭의 품목일지라도 규격에 따라 현저한 차가 있는 것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한다.

(3) 유고사업체가 발생하면 즉시 지도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폐업, 이전, 소재불명, 전업사업체로 조사중지가 있을 때까지 조사표를 제출하여 사업체명칭 및 대표자 전화번호 등의 변경 시에는 즉시 사업체 명부를 정정한 후 보고하고 조사를 계속한다.

지도원은 유고사업체보교중 이전의 경우는 담당구역을 확인하여 이전조치한 후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고 여타 유고사항에 대해선 취합하여 중앙에 일괄 보고한다.

(4) 조사원은 조사원기록부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사원기록부에 조사사항을 기록하여 다음 조사시 증강체크와 월초재고량 일치여부, 조사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표 분실의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타 문제되는 품목은 조사지침서 부록인 「제품해설집」을 활용 토록 한다.

### 제 . 품

#### 산업소분류 210, 230, 290 광업

##### (1) 휴광, 폐광 사업체에 대한 조치

###### 1) 휴광 사업체

가. 휴광 사유의 정확한 조사

나. 매장량이나 품위를 파악 하여 보고할 것.

다. 광산주를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을 것.

라. 재가동 시기의 조사를 청탁하 하여 누락되는 재가동 평신이 있도록 할 것.

마. 자금난으로 일한 휴광이 가장 많고 그 기간도 몇년씩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광산주를 직접 방문하여 재가동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

바. 관할 동사무소나 읍, 면사무소에 실적 보고가 있는지 매월 확인한다.

사. 가능한 한 2, 3개월에 한번씩 광산을 직접 방문하여 재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아. 재가동 불능일 경우에는 휴광이라도 조사 중지하여 부담을 줄일 것이니 성의 있게 조사하여 보고 할것.

## 2) 폐광 사업체

가. 폐광 사유와 매장량 품위의 정확한 조사

나. 광석의 가격이 오르거나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광산이 있는데 이런 광산의 경우에는 휴광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다. 광산은 조사 중지시키기 극히 어려우므로 신빙성 있는 타당한 자료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것

## (2) 품위환산문제

### 1) 품위 환산 조건표의 설명

가. 기준품위의 개념 : 환산에 편리하도록 또는 가장 중심이 되는 품위를 설정하여 총물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수치이다.

나. 환산수치 : 광산들은 그 품위에 따라 실수율 혹은 실채취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동광석 20%라면 실수율은 94.5%, 10%라면 93%, 2%일 경우 82.0%로 실수율은 떨어진다.

환산 조건표의 수치는 이러한 실수율을 합리적으로 적용시켜 얻어진 수치이니, 비례식을 적용하여 환산하자 말고, 자침서의 환산 조건표에 따라 환산할것

## 2) 실제환산 방법

가. 동평석 100%의 품위 10%인 경우 :

10% 환산수치 0.630을 곱해 주면된다.

$$100\% \times 0.630 = 63\%$$

나. 동평석 100%의 품위 12.5%와 12.55%의 경우 :

ㄱ. 품위 12.5%  $100\% \times [0.733 + (0.847 - 0.733) \times \frac{5}{10}]$

ㄴ. 품위 12.55%  $100\% \times [0.733 + (0.847 - 0.733) \times \frac{55}{100}]$

12%의 환산수치 : 0.733 13%의 환산수치 : 0.847

다. 매월 품위가 달라지는 경우 :

ㄱ. 월초 재고(즉 전월말 재고)는 전월에 환산했던 수치 그대로 적는다.

ㄴ. 생산, 출하는 기준품위로 환산한다.

ㄷ. 월말 재고량 = 월초재고량 + 생산량 - 출하량 ± 파부족보정량의  
잔식으로 계산한다.

ㄹ. 생산 < 출하인 경우 남은 물량을 환산해서 월초재고의 기환산  
된 물량에 더해주면 된다.

ㅁ. 생산 < 출하인 경우 출하 - 생산해서 남은 물량을 전월의 품위  
로 환산한 물량만큼 기환산된 물량에서 감해주면 된다. 그리고  
파부족보정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산하여 가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비. 동광석 월초재고가 품위 10% 100%이고, 생산, 출하가 각각

11% 100%, 50%인 경우의 환산실례

$$\text{월초재고} : 100\% \times 0.630 = 63\%$$

$$\text{생산} : 100\% \times 0.700 = 70\%$$

$$\text{출하} : 50\% \times 0.700 = 35\%$$

$$\text{월말재고} : \text{월초재고 } 63\% + (100\% - 50\%) \times 0.700 = 98\%$$

#### 3. 실제 조사표 작성요령

품목명	규격	단위	월초재고량	생산량	출하량	월말재고량
동광석	11%	%	100	100	50	150
	15%	%	63	70	35	98

라. 품위 환산조견표에 없는 품목은 비례식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즉 품위 70%, 형석 30%를 생산한 것을 환산하면 기준품

위가 80%이므로  $30\% \times 70$  (실험품위), 80 (기준품위) =

26%이 된다.

(3) 기준품위: 무연탄: 4,800 ~ 5,000 Cal

철광석: Fe 56% (조견표에 의거 환산할것)

중석광석: Wo 370% ( )

금광석 (금괴): Au 99.9%

은광석 (은괴): Ag 99.9%

동 광 석 : Cu 15 % ( 조건표에 의거 환산할것 )  
연 광 석 : Fe 50 % ( " " )  
아연 광석 : Zn 50 % ( " " )  
몰리브데늄광석 : MoS<sub>2</sub> 90 % ( " " )  
석회석 : CaO 50 %  
인상흑연 : Fe 75 %  
토상흑연 : Fe 75 %  
활석광석 : 칙급  
형석광석 : Ca F<sub>2</sub> 80 %  
납 석 : Sk # 32  
고령토 : Sk # 34

#### (4) 조사표 작성지

1) 제품 : 광산측에서 뽑아주는 품위와 물량을 기입하고 그 밀린에  
기준품위로 환산한 물량을 기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 품목을  
필히 2종류로 기입해야 하는 것이다. 매월 품위가 달라진다면  
기준품위로 환산한 물량의 등식은 일치하여야 한다.

[예] P. 44. 8. 실제 조사표 작성요령.

2) 원재료, 고용급여, 연료 및 동력  
광목, 폭약이 누락되는 광산이 많고 연료 및 동력부분도 누락되  
는 사례가 있으니 누락하여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적요란

증감요인은 필히 기입하여야 한다. 대상처님에 광석의 판매처는

매월 기입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조그만 차이일 경우에도 직접 실무자에게서 증감요인을 보고 받고 대상처를 매월 기입하고 또 담당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기입하여야 한다.

(5) 금광석 및 은광석은 제련된 금괴 및 은괴만을 조사하여 제품란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이종으로 기입한다.

예 품 목 번 호	품 목	규 격	단 위
004	금	99.9 %	g
273	금 괴	99.9 %	g
005	은	99.9 %	kg
272	은 괴	99.9 %	kg

규산(珪酸) 질광석을 생산하여 자가제련하는 광산의 경우에 반드시 월별로 적요란에 "제련구분: 자가제련"이라고 기입하고 생산량 및 출하량을 제품란에 기입한다.

유화질 금광석을 생산하고 생산된 원광석을 매광하는 광산의 경우에는 월별로 적요란에 매광처와 품위별로 매광량(원광석)을 기입하고 한다.

(6) 혼합 광석의 경우에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단, 구분이 명확한 혼합광은 평균(표준) 함유량에 따라 구분조사하여야 한다.

(7) 석회석 조사시에 자체 생산한 석회석으로 시멘트나 기타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에는 원료로 재투입하는 전량을 "자가소비량"으로 기입한다.

(8) 수출광석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절요란에 매월 수출국명과 수출량을 기입한다.

예 : 수출량 3,000 % ( 미국 1,000, 일본 2,000 % )

(9) 품목명 분류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

(1) 배토는 고령토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2) 취수연은 몰리브데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3) 흑연은 인상흑연과 토상흑연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10) 무연탄

무연탄의 재고는 산지재고, 역두재고, 소비지재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사업체의 재고라 함은 산지 또는 역두, 소비지재고를 불문하고 판매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한 그 사업체의 관리 하에 있으면 소재지에 관계없이 아사업체의 재고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비록 산지에 있는 재고라 할지라도 판매(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체 소유가 아니므로 출하로 간주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산업 소분류 311-312 식료품제조업

(1) 농산물 통조림은 복숭아, 귤, 버섯 등 야채 및 과실 통조림을 포함 조사하여야 한다.

(2) 분유와 연유에 청정유 또는 시유(특장우유)를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청정유라 함은 원유를 냉각시킨 다음 저유를 거쳐 여과시킨 것을 말하며 사유는 생우유를 살균 처리한 원상 그대로의 우유이며 연유는 생우유를 탈수 농축시킨것으로 시유와 구별되며, 분유는 완전탈수 시켜 분말화된 것이다.

(3) 냉동 해산물에 냉장이나 빙장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냉동해산물은 일반적으로  $-20^{\circ}\text{C}$ 이하의 저온으로 급냉각시켜 해산물 자체를 얼게 하여 냉장창고에 보관하는 것이며 냉장은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창고에 보관되는 것이다.

빙장은 해산물과 얼음을 혼합하여 부패(변질)를 방지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은 냉동해산물에서 제외되어 원양어선에서 냉동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반입하여 다시 냉동시킨 것은 포함 조사한다.

(4) 어 및 해산물 통조림의 단위를 판(Can) 또는 상자(C/S) 등으로 하여서는 안되며 %으로 조사 기입한다.

(5) 해산물통조림에 축산물통조림(쇠고기 등)이나 농산물통조림(과일통조림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수산물통조림만 조사한다.

(6) 석빵, 설탕과자의 단위는 %이다. 개 또는 봉지로 보고 하여서는 안되며 %으로 환산하여 조사 보고한다.

초코레트, 드롭프스, 캬라멜, 제리, 캔디 등은 설탕과자에 포함시키나 유과, 정과, 다식 등은 제외한다.

(7) 된장에 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춘장은 중화요리에 사용되는 검은 빛깔이다.

산업 소분류 313 음료품제조업

(1) 소주나 탁주에 있어서는 동종류나 주종끼리 사업체를 통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통합된 사업체와 남아 있는 사업체 (현재 생산하는 사업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탁주의 경우는 각 도시의 단위까지는 통합이 완료되었으니 협동관리위원회 산하에 포함된 사업체와 현재 생산중인 양조장을 구분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한다.

(2) 소주, 주정, 탁주, 청주, 사이다, 콜라의 지정 단위는  $kl$ 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되» 혹은 «병»으로 응답할 경우에는 이를  $kl$ 로 환산하여야 한다.

$$1 되 = 1.8 ℥ \quad 1 kl = 556 되$$

(3) 동일품목으로서의 품질규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합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기입한다.

	품 목 명	규 격	단 위	생 산 량
051 X	소 주	25°	kl	200
051 X	소 주	30°	kl	300
051 ○	소 주	25 ~ 30°	kl	500

(4) 쥬스는 환타, 오란C, 미린다, 씨니텔, 망파C, 셀侑 등을 말하며 사이다, 콜라를 제외한 청량음료이다.

산업소분류 321 섬유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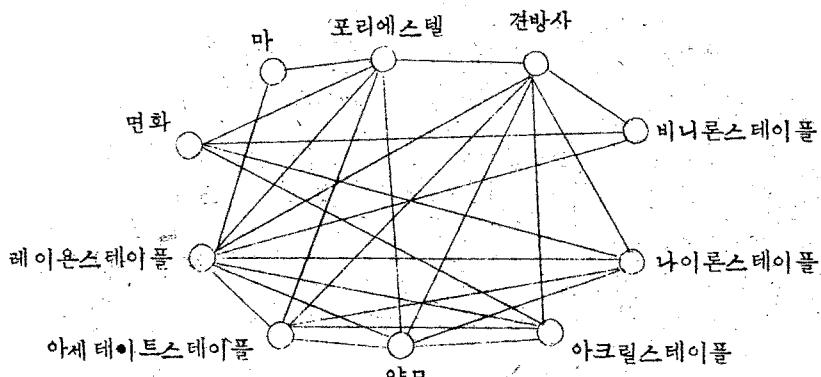
(1) 섬유분류

방직 섬유	천연 섬유	식물성 섬유	총자모섬유	- 목화
			勒皮 (느피)	- 아마, 저마, 대마
			임맥	- 탈레지아삼, 사이잘 삼
			파설	- 야자, 수세미
		동물성 섬유	수사	- 양모, 염소털 (모해어, 카시미아)
			낙타털	- 토끼털 등
		잡섬유	잠사	- 가잠견사, 작잠사, 천잠사 등
			잠섬유	- 羽毛
		광물성 섬유	석면	
		채성섬유 (펄프)	비스코스 레이온 (Viscos Rayon) 큐프라 레이온 (Cuprammonium Rayon) 牛乳蛋 섬유 (Fibrolane)	

화학섬유	반합성섬유(펄프) Semi-Synthetic fiber	{ 아세테이트레이온(Acetate rayon)
또는		폴리아미드사섬유(Polyamide fiber)
인조섬유	합성섬유(석유화학) Synthetic fiber	폴리에스테르사섬유(Polyester fiber) 폴리비닐알코올사섬유 (Polyvinyl alcohol fiber) 폴리아크릴사섬유(Polyacrylic fiber) 폴리프로필렌사섬유 (Polypropylene fiber) 폴리에틸렌사섬유(Polyethylene fiber)

※ 폴리아미드사는→나일론, 폴리에스테르사는→텔레렌, 태트론, 폴리아크릴사는→엑스란, 케시미론, 폴리비닐알코올사는→미클론, 바닐론이라는商品名으로 喜美体 및 一般에게 불려지고 있음.

(2) 현재 각 섬유의 혼방되는 관계도표



특수제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혼방사는 상기 도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혼방되는 섬유의 종류는 2종 이상인 경우도 많다.

(3)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 (교적포함)

(1) 면과 화학섬유의 혼방

- ① 면과 1종의 타 화섬과 혼방일 경우, 기준비율은 50:50으로 하되 동률인 경우에는 혼방된 화섬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 ② 면과 2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 중량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호칭하고 동율일 때는 혼방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纶 (이는 가격순임)에 의하여 호칭한다.

(2) 모와 화섬의 혼방

- ① 모와 화섬과 혼방일 경우 : 기준비율은 60 (화섬) : 40 (모)로 하고 기준비율일 때는 모를 우선적으로 택한다.

( 예 : 혼방소모사 · 모혼방직물 )

- ② 모와 2종 이상의 타 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혼방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고 동율일 때에는 모,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 순에 따라 우선적으로 호칭한다.  
단, 모가 4.0 %미만일 경우에 한함.

(+) 견과 화섬의 혼방

- ① 견과 화섬(합성섬유)의 혼방일 경우 : 기준비율을 30(견) : 70(화섬)으로 하고 동율일 때 견을 채택한다.

( 예 : 견 혼방직물 )

- ② 견과 2종 이상의 타화학섬유와 혼방일 경우에는 중량 비율이 가장 큰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한다. 단, 견 30.0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 ③ 견과 모의 기준 혼방비율은 40(견) : 60(모)으로 하고 동율일 때는 견을 택한다.

(\*) 2종의 화섬(합성섬유) 혼방

- 등분율 (60:40 혹은 30:70 등) 이상을 점한 섬유명을 우선적으로 택하되 동율일 경우에는 합성섬유, 아세테이트, 비스코스순으로 호칭한다.

※ 혼방사 및 혼방직물 조사시는 조사표의 규격란에 혼방비율을 기록할 것.

또한 사업체의 생산품을 어느 품목으로 채택하여야 좋을지 자신이 없을 때는 적요란에 원재료명과 혼방비율을 명기하고 견본을 조사표 후면에 첨부하여 보고할 것. 모든 혼방사 및 혼합직물

(교직포함)은 상기요령에 의하여 구분하여 보고한다.

(4) 품목구분요령

- ① 생사: 누에고치에서 뽑은 실로써 누에고치는 상견(上繭), 중견(中繭), 하견(下繭), 쌍견(雙繭), (玉繭, 玉고치)으로 대별되어 그 중 한견으로 열탕처리(熱湯処理)하여 한가닥의 긴 필라멘트(filement)식의 실을 뽑아 몇가닥으로 합하여 만들어진 실.
- ② 면사: 순면사 및 면혼방사 포함, 단 면혼방사인 경우 다른 종류(質)의 섬유와 혼방되었을 때 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한 파반일 경우 한합(면 50% 이상).
- ③ 방모사: 방모사는 소모사와는 달리 그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가 많고 섬유의 질이도 길고 짧은것이 혼합되어 사용되어 제조공정도 카아딩만 거치기 때문에 잔들이 많고 유연한 특징을 가짐.  
혼방방모사포함. 이때 방모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상이어야 함.
- ④ 순소모사: 비교적 잘 간주려진 섬유를 사용하여 가늘고 섬유가 평행으로 배치되어 있어 모양이 매끄럽게 보이며 보풀이 적고 균형된 굽기를 가짐(all. wool)
- ⑤ 혼방소모사: 각종 섬유와 모(소모)가 혼방되어 만들어진 실로써 주로 대종을 이루는 것이 화섬이며 견과 그의 다른 섬유도 있음  
(혼방관계: 혼방사 및 혼방직물의 기준량 비율참조)
- ⑥ 합성(화학)섬유방직사(화섬사): 석유화학공정을 통하여 나프사를 원료로한 일체의 섬유를 말하여 여러 종류가 있으나, 나이론, 폴리

에스텔, 아크릴이 대중을 이루며 이 3종류가 합성섬유공정의 80% 이상 차지함. 즉 섬유로된 fiber 및 filament 등 일체의 화학섬유가 방적할 수 있도록 제공정한 絲의 상태 이때 합성장섬유사 (filament)도 직접 방적할 수 있으면 포함시킴.

⑦ 재생섬유방적사 : 셀루로오스나 단백질등의 자연에 존재하는 고분자를 용해하여 이것을 노즐에서 밀어내어 섬유모양으로 응고재생(凝固再生) 한 것을 말하며 즉

Viscose staple fiber (원료 : 펄프 linter 등의 섬유질 S.f면)을 원재료로 한 S.f 絲 및 Viscose filament (비스코스 인건사)를 칭함.

현재 비스코스인건사는 원진레이온 Co과 임직공장(수탁업체)에서만 생산되므로 타 업체의 생 산 품 중 인건사로 조사되는 예가 허다하니 그러한 경우 반드시 원재료 난을 활용하여 조사지시를 받도록 한다.

⑧ 견방사 : 생사를 제조할 수 없는 부자사·페니·박견·줄각견·찌꺼기 고치, 생피저, 양견, 섞은고치 등을 타면(打綿)하여 이것을 조사(繕絲) 하여 실의 상태로 만든것. (수방사, 주방사, 견수방사포함) 단 견흔방사(견과 타섬유와 혼방된 실) 및 견연사(견을 몇가닥으로 묶아 놓은 실)는 제외된다.

⑨ 각종화학섬유연사 : 각종화학섬유사를 2단사 이상 교야 반투포 실로 써 합사(몇가닥의 실을 합해 놓은 실) 면사, 면연사는 제외되며 화학섬유에만 한함. 어방사와는 용도를 기준으로 분리한다.

⑩ 화섬사양말 : 단위는 필히 천족을 사용하고 순모, 순면 양말은 제외하며 화섬사 60% 이상의 혼방사로 된 양말은 포함한다.

특히 팬티스타킹 타이스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양말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⑪ 메리아스의 의 : 편물의 의 (반드시 편물한것을 말하며 재단 재봉한 것은 제외) 셔타류, 플오버, 저지, 카디igan, T셔츠, 수영복, 체조복, 경기복, 슈트, 쟈켓 등을 말하며 단, Y-Shirts (와이셔츠) nylon 내의 이너웨어, 브라우스, 동내의, 스랙스 등은 제외됨,

⑫ 아마사 (亞麻絲) : 마사 (麻絲)에는 아마 (亞麻), 저마 (苧麻), 황마 (黃麻), 대마 (大麻), 라마 등이 있으나 이중 아마 (亞麻)를 재료로 하여 생산된 사만을 칭함.

참고 : 혁재 대농 Co 와 그 임직공장의 독점 품목임을 강조한다.

⑬ 면직물에는 광목 (소창 포함), 내광목, 육광목, 당목, 면법포, 포프린, 응, 면복지를 포함하여 면직물이라 기입한다.

(단 글렌을 제외)

⑭ 순소모직물 : 순소모사로 짠 직물, 고급지로서 신사복, 숙녀복에 사용한다.

⑮ 방모직물 : 방모사로 짠 직물, 저급지로 모포, 겨울용 오바, 흄스방에 사용한다.

⑯ 모혼방직물 : 소모사 및 방모사와 타사 (화섬사 및 면사등)가 혼방된 직물을 말하며, 이때 혼방비율을 기재할 것.

⑰ 혼방합성섬유유물 : 2개 이상의 섬유가 혼방되어 제조된 직물중 합성섬유가 50% 이상 차지하였을 때를 말한다.

(단 모와 혼방일때 60% 이상 견과 혼방일때 70% 이상)

#### (5) 자가사용량의 문제

이미 조사되고 있는 지정품목 중 다음의 품목은 타 제품 생산을 위해 재투입에 충당되는 비중이 크다.

이는 출하에서 분리하여 자가소비량을 조사한다.

자가소비량을 조사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면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광목과 면복지를 동시에 생산할 때는 면사 생산량 중 외부에 출하되는 량과 광목과 면복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재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면사 → 광목, 당목, 포푸린, 면복지, 음등 일반면직물

순합성섬유사 → 순합성섬유직물

혼방합성섬유사 → 혼방합성섬유직물

순소모사 → 순소모직물

방모사 (혼방방모사 포함) → 방모직물

혼방소모사, 혼방방모사 → 모혼방직물

생사·견방사 → 순본견직물, 견흔방직물

연사, 어망사 (연승) → 어망, 로프

재생섬유사 (인견사, 스프사) → 재생섬유직물

특히 직물류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자가소비량이 있는 경우 직물제품

및 의복류생산이 있으나 의복류만 빠짐없이 금액조사표에도 조사할 것.

#### (6) 섬유제품중

지정단위가  $m^2$ 로 되어 있는 품목을 업체사용단위 yds로 조사되고 있는데 규격이 다양하므로 반드시  $m^2$ 로 환산하고 규격란을 활용한다.

공식 : ( ) yd < 길이 > × ( ) 인치 < 폭 > × 0.0254 × 0.9144 = ( ) m<sup>2</sup>

예 : 직물 폭이 3.6 인치이며 길이 1yd는  $0.9144 \text{ m} \times 0.9144 \text{ m}$   
m로 계산해서 0.8361 m<sup>2</sup>가 된다.

#### (7) 지정품목종

사업체에서는 민수용, 관수용, 수출용을 분리하여 생각한다. 하더라도  
종합 조사하여 누락이 없도록 한다.

#### 산업소분류 322 의복제조업 (신발제외)

재료와 형태를 가리지 않고 구입한 직물을 가지고 재단·재봉한 모  
든 의류를 말한다. 즉 직물, 가죽, 모피 및 기타 재료를 절단하고  
재봉하여 의복·모자, 악세사리 등을 만드는 사업을 말하며 금액조사  
함.

- (1) 재고액은 장부가격 또는 생산원가에 의하여, 생산원가에 의한 계산  
이 불가능하거나 장부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 (2) 수출업체는 계약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평가한다.
- (3) 절요량에는 증감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예 : Y사쓰 수출증매 (나국)

아동복 의의 수출증가 (인도네시아)

남자용 양복 수요증가

세분류 3220 의복제조업

직물, 가죽, 모피 및 기타 재료를 결합하고 재봉하여 의복을 만들고 모자 및 의복 악세사리 등을 만드는 산업 활동으로서 이 항목의 중요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의의, 내의, 모자, 모피옷, 악세사리, 장갑, 멜빵 및 관련제품, 잠옷, 비옷 및 기타 방수의의, 가죽옷, 양털안 빨친 의복, 재료를 불문한 의복며, 손수건, 학사복 및 모자, 무대의상 등이다.  
의복수선업은 9520 (세탁 및 염색업에 분류된다)

32201 남자용양복 제조업

일상사무 또는 공식사회행차에 입는 양복, 양복조끼, 코트 및 오버코트 등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전통적 또는 민족적인 의상, 작업복, 승마복, 별도의 하의, 가죽옷, 모피옷, 방수코트는 여기에서 제외되나 군, 경찰, 악단, 학생의 정복은 여기에 분류한다.

32202 남자용셔츠, 작업복 및 관련 의복제조업

드레스, 스포츠셔츠, 하의 (반바지), 점퍼, 작업복, 내의, 잠옷, 여가복, 체육복, 경기체복등 남자용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되나 가죽 또는 모피장식 의복은 포함된다. 무대 의상, 학사복, 비옷은 제외한다.

#### 32203 여자의의 제조업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양장, 스커트, 코트, 비치웨어, 수영복, 보온활동복, 체조복, 경기제복등 여자용 의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죽 및 모피의복은 제외된다.

#### 32204 소아용의의 제조업

소아용드레스, 브라우스, 웨이스트, 셔츠, 코트, 양복, 반바지, 잠방이, 스커트, 스팩스, 비치웨어등 소아용 의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32205 여자용 및 소아용내의 제조업

여자, 소녀 및 소아용내의, 잠옷 및 기타 몸을 밭쳐주도록 설계된 의복제품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의 수요제품에는 브래저, 콜셋, 콜셋벨트, 콜세팅, 거들콜셋, 허프벨트, 임신후복띠, 캐미솔, 쉬미스, 패티코트, 스텁 잠옷, 펜티, 유아용 턱받이 등이다.

완전히 고무로 만든 콜세팅 3559에 부류된다.

### 32206 가죽 및 모피 의복제조업

성별에 관계없이 가죽, 구상가죽, 모피, 인조모피 등으로 의복을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장갑, 타이, 머플러 등 의복 악세사리는 제외된다.

### 32207 모자 제조업

벨트, 엎은물질, 가죽, 모피, 직물, 깃등으로 남녀용 모자를 만드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철모는 3819에 주형프라스틱모자는 3560에 운동경기용 보호모자는 3903에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죽 보호모자(소방관헬멧)는 여기에 분류한다.  
또한 모자장식물로 여기에 분류한다.

### 32208 장갑제조업

가죽, 구상가죽, 모피, 인조모피, 직물등으로 장식용, 방한용, 작업용의 장갑(완전편직제품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투용 그로브는 3903에 분류된다.

### 322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복제조업

종교의식복, 무대 의상복, 사동, 한복, 한자복, 방수복 및 의복 악세사리 즉

손수건, 쇼울, 스카프, 머플러, 타이, 띠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메리아스의 의나 메리아스내 의는 물량조사품목이니 금액조사표에는 제외시키야 하며 간혹 상기 제품을 금액과 물량 2종으로 병행조사할때가 있는데 차후 구분 조사하여야 함.  
그리고 직물직품(커튼감, 쉬트, 베개포, 나프킨, 식탁보, 이불감, 세탁복, 스팀카바, 자수물, 각종기) 베낭, 천막은 금액조사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천막은 물량조사만 하여야 함.

#### 산업소분류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 (신발과 의복제의)

가) 우혁(牛革)을 제조과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복수혁(갑피혁) Chromed upper

(용도) 고급구두 표면피혁 핸드백 등에 쓰인다.

(성질) 부드럽고 원피의 털이 붙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송아지의 것이 질이 좋다.

##### (2) 다리혁(Tanned Upper)

(용도) 군화용, 춤창(구두), 가방

(성질) 두껍고 단단하여 원피의 털이 붙은 부분이다.

##### (3) 이혁(Sole)

(용도) 작업용 창갑

(성질) 원피에서 복수혁이나 다리혁을 떼어 내고 난 안부분을 말하며 이혁을 만든 다음은 수구래(야교의 원료)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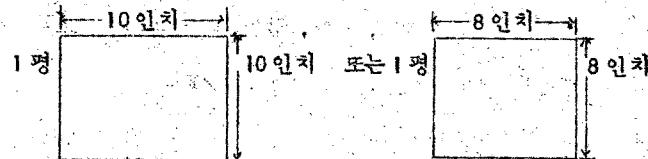
#### (4) 저 혁

(용도) 창용·바퀴·공업용 협벨트

(성질) 특수 제조과정을 거친 생산원피의 털이 있는 부분, 복수혁 보다 저혁이 비싸다.

※ 복수혁과 저혁을 합하여 우혁으로 조사하여 군화등 타생산품을 만들기 위하여 자가 소비가 있을 때는 출하와 구분하여 조사한다.  
또한 사업체에서는 소가죽의 단위를 평(坪) 또는 매(枚)로 하여 생산량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정 단위는  $m^2$ 이므로 이 지정단위로 환산하여 조사한다.

#### ※ 단위환산법



$$\text{사방 } 10 \text{ 인치} = 0.0645 \text{ } m^2$$

$$\text{사방 } 8 \text{ 인치} = 0.0413 \text{ } m^2$$

$$1 \text{ 매} = 30 - 40 \text{ 평}$$

$$1 \text{ 매} = 3.3 \text{ } m^2 (30 \text{ 평})$$

$$1 \text{ 매} = 3.7 \text{ } m^2 (40 \text{ 평})$$

나) 비닐제 트렁크의 경우 그 규격이 다양하므로 용적이 792 입방인치

(보통 12 인치×11 인치×6 인치) 이상의 크기만을 조사하여 학생 용책가방이나 서류가방은 제외한다. 또한 비닐 이외의 원재료 즉 직물제 등을 제외한다.

다) 핸드백에서 학생용 책가방이나 구슬백, 지갑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며 또한 피혁이나 합성피혁·P·V·C이외의 원재료로 만든 제품은 제

의한다.

산업소분류 324 신발제조업 (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제외)

- 가) 남자용 가죽신과 여자용 가죽신에서 소아용 가죽신은 제외하고 육군단화는 남자용 가죽신에 포함한다.
- 나) 군화 및 가죽장화는 목이 긴 군화와 장글화, 작업화, 등산화, 골프화, 가죽부츠 등을 포함 조사한다.

산업소분류 331 나무및나무와 콜크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 이 산업에 속하는 자재, 판재, 합판, 하드보드등 모든 제품의 지정 단위는 평인바: 아직도 才, 배, B/F, S/F등으로 조사되는 사례가 있으니 이는 다음 표령에 의하여 지정단위인 평로 환산하여야 한다.

$$\text{즉 } 1 \text{ 才} \approx 0.00334 \text{ m}^2 \quad 1 \text{ m}^2 = 300 \text{ 才}$$

$$1 \text{ B/F} \approx 0.002359 \text{ m}^2 \quad 1 \text{ m}^2 = 423.77 \text{ B/F}$$

합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표령으로 환산한다.

구 경			1 매 당 $m^2$	좌기두께는 1 S × F 당 $m^2$
가로 (m)	세로 (m)	두께 (mm)		
4	8	3.2	0.0095133	0.0002973
3	6		0.0053512	
4	8	3.6	0.0107024	0.0003345
3	6		0.0060201	
4	8	4	0.0111892	0.000372
3	6		0.006689	
4	8	6	0.017837	0.000557
3	6		0.010034	

(2) 소할재는 각재 및 판재에서 제외한다.

(3) 제재목은 두께 2치이상과 2치미만으로 나누어 지는데, 2치이상은 모두 각재로 조사하고, 2치미만중에서 너비가 두께의 3배이상일 경우에는 판재, 3배미만일 경우에는 각재로 조사한다.

산업분류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금속가구 제외)

(1) 연판품목을 유의하여 조사한다.

즉, 장농을 만드는 사업체에서는 경대를, 또한 책상을 만드는 사업체

에서는 의자를 대부분 제조하고 있으나 단일 품목만 조사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 (2) 판매업체는 원칙적으로 조사에서 제외되나 대부분 직영공장 또는 납품처를 가지고 있으니 뉴락 사업체가 없도록 한다. (직영공장, 납품처를 색출할 것)
- (3) 철제품과 녹제품을 구분하여 기입한다.
- (4) 생산된 제품중 견본 또는 선물로서 증정한 것이나 자체내에서 사용으로 사용한 것은 출하로 조사한다. 자가소비로 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책상에서는 탁자, 티테이블 등을 조사에서 제외하며 학생용 책걸상은 규격판에 기입하여야 한다.
- (6) 탁자, 티테이블등은 식상에 포함한다.
- (7) 장지문은 건물건축시 소요되는 모든 부제문작을 포함하여 조사되어 대문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1) 일반적으로 단위를 조사지침서에 지정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예가 있는데 이점을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2) 글판지원지는 글판지상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라이너지(A원지, B원지 또는 X원지라고도 함)와 가운데의 임체구조의 매체가

되는 중심원지(S원지) 등을 골판지 원지라고 하므로 이들을 ~~%~~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3) 골판지 상자와 판지상자는 단위를 천㎡로 조사하여야 한다.
- (4) 창호지의 지정단위는 "권"이며 1권은 2,000매이다.
- (5) 판지를 마니라판지, 백판지, 회색판지 등 여러가지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구분하지 말고 이들을 총칭해서 판지로 조사한다.
- (6) 종이제품은  $500(1\text{연}) \times 1,091(\text{가로}) \times 0,788(\text{세로}) \times$ 종이의 중량 =kg으로 환산한다.

산업소분류 342 인쇄출판 및 관련 산업

- (1) 일간신문의 조사단위는 천부(千部)이므로 단위미만은 4사 5입할 것이며 일일 발행 부수의 월간누계를 조사한다.
- (2) 잡지, 정기간행물 및 비일간신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조사시에는 그 명칭을 보고란에 기입하여 보고한다.
- (3) 일반 인쇄물을 권이나 부수로 조사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지정단위는 연(連)이다. 그러므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재료 투입량으로 조사한다.
- (4) 출판(발행)업에 있어서 전문사, 출판사는 인쇄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발행)업무를 하고 있을 때에는 조사대상이므로 조사하여야 한다.

- (5)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등은 재고량이 있을 수 없으며 회사적 원용 등도 출하량으로 간주하여 조사한다.
- (6) 일반인쇄소에서 주문에 따라 인쇄되는 신문, 잡지류는 조사하지 말고 일반 인쇄물만 조사한다.
- (7) 노트조사시 장부, 일기장, 회계장, 연습장 등은 제외하고 조사한다.
- (8) 엘범조사시 학교용 출업엘범등 기념엘범은 제외한다.

산업분류 051 산업용 화학물 제조업

- (1) 황산(유산), 염산, 가성소다 조사시에는 지정도로 환산 기입하여야 한다.
- ① 황산은 98%, 35%, 40% 등이 현재 생산되는데 98%로 환산해야 한다.
- ② 염산은 35%, 100%등이 생산되는데 35%로 환산해야 한다.
- ③ 가성소다는 40%, 46%, 97%, 100%등이 생산되는데 100%로 환산해야 한다.
- (2) 암축산소의 단위는 본(병)이 아니고  $m^3$  이다.
- $1\text{本} = 7\text{ m}^3$
- (3) 아세치렌가스는  $kg$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본(本), 또는  $m^3$ 는 반드시  $kg$ 으로 환산해야 한다.
- (4) 호르마린은 합판 접착제로 대부분 소비되므로 합판 조사시에는 호

트마린 생산여부도 확인 조사한다.

(5) 스테아린 산은 세탁비누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므로 세탁비누 조사시에 스테아린 산도 조사한다.

(6) 염료는 각종 염료(직접염료, 산성염료, 유호염료, 형광염료 등)를 각각 구분하여 조사한다.

(7) 실충제 실균제를 생산하는 사업체는 제초제도 생산하니 누락없이 조사하고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황산, 염산,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사시 생산여부를 확인한다.

(8) 나프샤 분해공장에서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에치렌, 프로피렌, 부타디엔키씨렌, 싸이크로헥산 등이 생산되니 누락없이 조사한다.

(9) 폴리에칠렌은 저밀도 폴리에칠렌과 고밀도 폴리에칠렌이 있는데 구분하여 조사한다.

(10) 용성인비 조사시 용파린도 조사하여 용파린 ~~제조식~~ 사용하는 용성인비 반제품도 용성인비에 포함 조사한다.

(11) 화학섬유의 종류에는

① 재생섬유 — 비스코스

② 반합성섬유 — 아세테이트

③ 합성섬유 — 아크릴릭, 나이론,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피렌, PVA 등

이 있으며

원재료로 화학펄프, 카프로락탐(Caprolactam), 아크릴로니트릴(A.N.)

Monoma), PVA powder, 에치 레그리플(EG)

Polypropylene Resin, DMP, TPA 등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서는

모든 화학섬유의 종류별로 S·F(Staple fiber), Fil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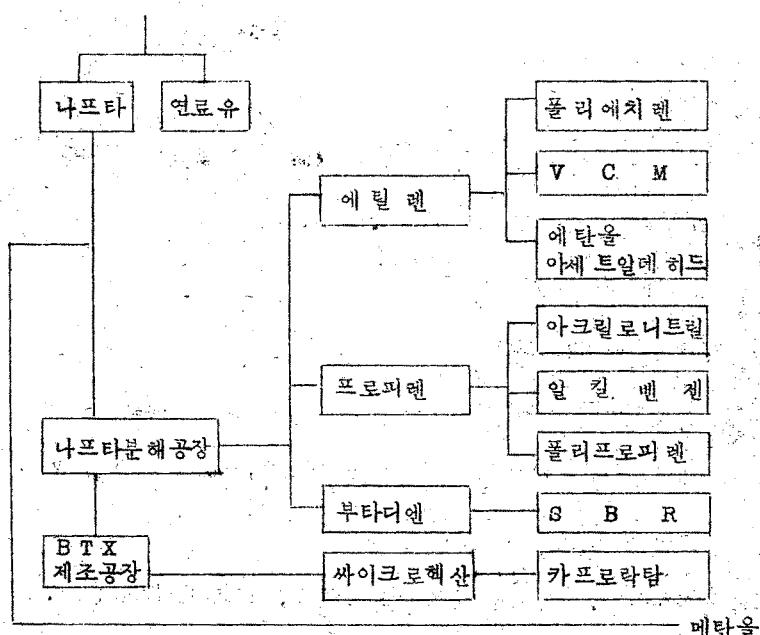
Tow로 구분 조사한다.

(12) 가소제에는 DoP, DoA, DBP 등 아주 많은 종류가 있으므로 전부 조사한다.

(13) 특히 공업용화학제품은 대부분의 품목이 자기소비량이 있으므로 조사시 이점을 유의하여 자기소비량조사에 누락없도록 한다.

#### 율산 석유화학단지 계열도 참고

##### 정유공장



산업소분류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 (1) 의약품조사에 있어서 한 사업체에서 의약품의 품목(예, 화장품, 치약, 음료품(오란씨 등)을 병행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의약품만 금액조사하고 기타 품목은 물량 조사한다.
- (2) 의약품이 반송되었을 때 그것이 재출하 할것인지 폐기처분할 것인지 구분하여 폐기처분은 과부족보정량에 기입하고 재고액에서 제외한다.
- (3) 글리세린은 우지분해과정에서 생산되는 것이니 비누공장 조사시에는 글리세린도 함께 누락없이 조사한다.
- (4) 분말세탁비누는 세탁비누에 포함하며 세탁용 합성세제는 그 형태가 분말, 고형, 액체 모두 합산하여 조사한다.
- (5) 성냥은 가정용 데용기준(대형)으로 1,000갑이 1단위가 된다.

세분류 3522 의약품제조업(한국표준 산업분류 발췌)

세균 및 바이러스 백신, 혈청 및 프라스마와 같은 생물학제품, 의료화학품 및 항생제, 카닌, 스트리킨, 살파제, 아편 및 유도체, 부신, 카페인, 코데인 유도체, 비타민과 같은 생약제품 및 인간 또는 동물용 약제품을 포함한 의약품을 제조 및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221 생물학제제 제조업

항혈청, 세균백신, 특신 및 유사제품, 유기요법선과 선의 추출물, 피의 유도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35222 의료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 항생제 제외**

푸로비타민과 비타민 농축물 및 혼합물, 천연물, 합성물, 그리고 시드 및 천연 또는 합성 일카로이드와 그들의 유도체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35223 항생제 제조업**

페니시린, 스트렙토마이신, 크로로로페트라크린, 액티노마이신 등과 같은 항생제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소매용으로 포장을 하는 활동은 35224(약제품제조업)에 분류된다.

**35224 약제품 제조업**

수의약물을 포함해서 샘플, 정제술, 연고, 분, 용액등 최종소비를 위하여 완성한 제제로서 사람 또는 동물의 내부 또는 외부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제조업으로서 한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동식물 물질을 농축, 추출 및 가공하는 산업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2) 각종 연탄은 반드시 치정단위 별로 조사하여야 한다.

(예시) 22 공탄 277개 = %

31공탄 180 개 = 1%

49공탄 80 개 = 1%

또한 각종 연탄공장이 통합 단일공장으로 되어 있으니 통합된 사업체  
명부와 현재 남아있는 사업체 명부를 보고하여 업무지시에 따라 종전  
의 사업체는 조사 중지한다.

사업소분류 355 고무제품제조업

(1) 방한화는 외부 전체면적에서 고무가 차지하는 면적이 크면 장화에,  
섬유부분의 비중이 크면 포화에 포함한다.

(2) 운동화는 훈련화(통일화), 노동화, 일반운동화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고무호스의 지정단위는 평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권(券)으로  
보고 하여 라도 평으로 환산하도록 사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1권은 50평(呎) = 15.15m<sup>2</sup>

(4) 캐미슈즈는 기타 플라스틱제품에서 조사한다.

(5) 재생고무를 원료로 한 고무박ing, 공 등은 조사대상이 아니다.

(6) 스플지는 천연 및 합성고무로 만든것만 조사하고 합성수지(P.V.C등)  
스폰지는 플라스틱제품으로 조사한다.

스폰지의 단위는 평이므로 평이나 기타의 단위로 조사하였을 때는 평  
로 환산하고 환산 불가능할 때에는 규격을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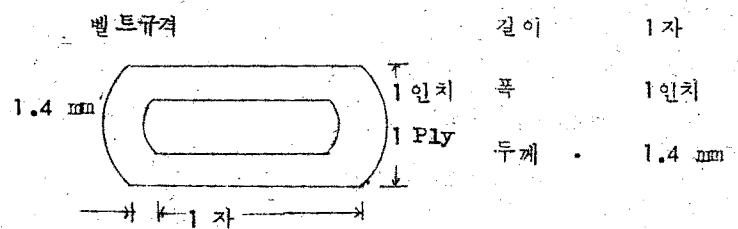
일반적 으로 스플지 1평의 규격은 가로 1자 세로 1자 두께 10mm

이며 이 때는 1,000평이 1m<sup>2</sup>이다.

(7) 각종 고무벨트( V형 고무벨트, 평고무벨트, 콘베아벨트)의 지정단위는 천Ply이다. 그러므로 사업체에서 측(尺) 또는 평로 보고 하더라  
도 Ply로 환산하여야 한다.

m/Ply = 폭(幅) × 표층수(布层数) × 길이

$$1 \text{ Ply} = 0.33 \text{ m/Ply}$$



보통 고무벨트는 두께가 3겹( $1.4 \times 3$ ) 4겹, 5겹으로 되어 있다.

콘베아벨트는 보통 폭이 20인치이다.

산업소분류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 플라스틱제품을 세분하여 식기 및 용기류, 신, 필름, 호스 및 파이프, 배자로 구분 기입하고 끝난에 이를과 기타제품을 합체하여 별도 기입한다.

(2) 운동화나 고무신제조업체에서 캐미슈즈와 같은 플라스틱제 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으니 조사에 누락이 없도록 할것.

종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석유 및 석탄제품제외)

(1) 판유리는 2 mm로 환산할 것. (단위 상자)

"예시" 규격 3 mm, 200상자를 생산한 업체가 있다면 환산하여 규격

2 mm,  $3 / 2 \times 200 = 300$ 으로서

조사표에는 환산한 치수인 규격 2 mm, 300상자로 조사하고 포장  
(상자)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환산하여 보고한다.

판유리 1상자(case) = 100 평 =  $100S / F (\text{ft}^2) = 9.29 \text{ m}^2$ 로 환산한다.

(2) 벽돌(소성돌)은 각종 적벽돌(赤)을 전부 포함하여야 하며 휘장연  
와(오지벽돌)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소성벽돌(적벽돌) 1매는 2 kg 500 g이니 무게로 나왔을 시 1매 =  
2.5kg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3) 흡관 스페트연통은 콘크리트관과 구분하여 조사 보고한다.

(4) 소석회 조사시는 석회석 생산량도 동시에 조사해야 하며 석회질  
비료와 구분하여야 한다.

(5) 석면스페트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두께	가로	세로
소풀스페트	6자	65 mm	720 mm
(주택용)	7자	"	2120 mm
	8자	"	2420 mm
대풀스페트	6자	"	960 mm
(공장. 극장용)	7자	"	2120 mm

8자	65mm	960 mm	2420 mm
기와스케트	6 mm	570 mm	1050 mm
(농촌 개량지붕형)			
평 스케트	4.5 mm	910 mm	1,820 mm
(고급주택용)	6 mm	910 mm	1,820 mm
	6mm	1,200 mm	3,420 mm

산업종분류 371 제 1차철강산업

(1) 환강, 환철, 청강, 평강, 반원강 등은 모두 봉강에 포함한다. 강반성 품에는 부룸, 빌렛, 슬라브, 쉬트바, 대강, 핫코일등을 포함 조사한다. 단, 철근은 봉강에서 제외하여 구분 조사한다.

(2) 합금철

망강철(만암철), 규소철, 규소망강철, 크롬철, 불리브메철, 니켈철, 텅그 스텐 스펜철등을 조사하고 비금속합금을 제외한다.

(3) Angle(凸형강), Channel(凹形강) I-빔은 형강에 포함한다.

(4) 삼수도관 구조관은 강관에 포함한다.

(5) 강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박판: 3 mm 이하

중후판: 10mm 이상

(6) 주철로 만든 이형관·U형관은 주철관에 포함한다.

(7) 가단주철이라 함은 가단성(可鍛性) (휘어질 수 있으나 잘 부러지지 않은)이 있는 쇠를 말하며 금속관 이음쇠, 방열기 등을 만드는 쇠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단주철을 생산하여 금속관 이음쇠를 만드는 경우에는 생산 품목이 가단주철과 금속관 이음쇠의 두 가지가 되며 순수하게 출하된 것만 각각 출하량에 기입한다.

(8) 기계용 주물이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체를 만들기 위하여 녹인 쇠를 여러 가지 형틀에 부어 만든 제품만을 (기체의 原体) 조사하여야 하며 철제 가마솥은 알미늄 주물제품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알미늄 주물로 만든 제품은 알미늄주물제품으로 구분조사하여야 한다.

(9) 다음 품목들은 자가 소비량이 있으니 유의하여 출하량과 별도 구분 조사한다. 선철, 강판성품, 강판, 나동선, 흑철선

(10) 흑철선도 마찬가지로 흑철선으로서 쇠못을 만들거나 압연을 입혀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가단주철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또한 흑철선에서 경강선, P.C강선 등 특수한 용도로 만든 강한 철 선을 포함하여 비철금속으로된 ACSR (알미늄선) 전유선등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72 제 1 차 비철금속 선업

(1) 알미늄 주물제품과 프레스(압연) 제품이 가끔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물제품은 알미늄판을 녹여 부어서 만든 것으로 보통 두껍지만

깨지는 성질의 것이며 프레스제품은 깨지기 보다는 찌그려지는 것으로 두께가 얇고 주로 노란색을 한다. (일미늄판으로 만듬)

- (2) 나동선의 경우 일차제품으로 나동선을 만들어 케이블선, 핵성수지피복 면선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가선과 출하된량을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산업소분류 38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 (1) 금속제품 및 기계류 생산업체에서는 거의 주문에 의해 생산되므로 생산품이 월별로 달라지는 사업체가 있으므로 기존 조사품목 외에도 조사대상품목이 생신되면 빠짐없이 조사한다.
- (2) 농업용 수공구에서는 금속제만 조사되며(삽, 펑이, 호미, 쟁기, 쇠스랑등) 쟁기에 있어서는 완제품이 아닌 경우 벗과 보습을 한상으로 하여 조사되어야 하며 곡괭이도 농업용 수공구에 포함한다.
- (3) 석유스토브(난로)는 석유관로와 분류되어야 하고 스토브(난로)만 조사되어 관로는 제외된다.  
단, 사업체에서 완전 겸용으로 생산된 것(반사형과 철사망이 부착된 것)은 스토브로 포함 조사한다.
- (4) 방열기(라지에타)중에는 콘베타, 월, 히터등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모두 제외하고 순수한 라지에타(실내 스텀용)만을 "매"로 조사한다.  
자동차용방열기는 구분조사한다.

(5) 알미늄프레스제품(식기 및 용기)과 알미늄주물제품(주물을 부어서 만든 것)은 구분 조사한다.

(6) 스텐레스스틸제 식기에서는 한식기(밥그릇, 주전자, 신선로등)와 양식기(쪽코, 스푼, 나이프 등)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신업소분류 382 기체제조업(전기제외)

(1) 공업용 보일러, 발동기, 동력탈곡기 등 기체제조업에 있어서는 특히 수리와 생선을 엄밀히 구분 조사한다.

(2) 발동기는 석유 및 경유발동기만 조사한다.

(3) 디젤기관에는 농업용 디젤기관 디젤발동기까지 포함되나 수송용(선박용디젤기관과 자동차엔진)은 분리 조사되고 있으므로 경운기 부착용 디젤엔진과 디젤발동기 등을 디젤기관으로 조사한다.

(4) 인력탈곡기는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5) 분무기는 농업용 등침식 어깨거리형(배낭형) 자동 및 수동분무기와 족답형 등 농업용을 조사하여 곤충(파리, 모기)을 제거하기 위한 소형분무기(가정용펌프), 페인트용, 세탁소에서 사용하는것 스프리전(등은 제외한다.

(6) 철삭공구 조사시는 공구의 명칭을 세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쇠톱틀 줄 등은 공장용 수공구로 조사하고 쇠톱널파 유리칼 혹은 목공용 칼

날은 제외한다.

- (7) 선반, 압축기, 프레스기는 수리품과 생신완제품을 구분 조사하고 적요  
란에 용도, 모양, 규격 등을 기입토록 한다.
- (8) 쟁광과 샷불은 혼동하기 쉬우므로 명확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 (9) 정미기 및 정맥기에는 현미기, 제분기, 등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 (10) 활판인쇄와 옵셀인쇄기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11) 동력펌프에는 자동식 펌프와 양수기(수리관개용)를 포함 조사하며  
수동식 펌프(우물용)는 제외한다.
- (12) 재봉틀 조사시는 다이까지 포함된 완제품을 원칙으로 하나 재봉틀  
두(미싱수)만 생산하더라도 완제품으로 간주 조사한다.
- (13) 발브는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하고 자동차 부속용(발브  
가이드) 엔진발브, 타이어 튜브발브 및 수도꼭지는 제외된다.
- (14) 베아링은 불베아링, 블베아링, 스리스트베아링 등 전부를 포함하며  
자동차용 메탈베아링, 엔진베아링, 유니버설 조인트 등은 구분조사 하여  
야 한다.
- (15) 기어(톱니바퀴)는 순수한 톱니바퀴만 조사하고 완제품으로서의 자동  
차 제동장치인 기어는 제외한다.
- (16) 압연기를에서 철드풀이나 철강 압연용률은 조사하여야 하나 고물분쇄  
용 고무률은 제외한다.

산업소분류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383 전기기체 기구 제조업(산업소분류)

- (1) 전동기 : 전력을 입력으로 해서 출력을 기계적 에너르기로 빼내는 전기모터를 말하며 조사지정단위는 HP이나 1마력이하 및 대로 조사될 때는 전체 생산대수를 HP으로 환산 기재 조사한다.
- (2) 변압기 : 전력을 일정하게 하고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로 조사지정단위는 KVA이며 대(台)로 조사될 때는 KVA로 환산 조사한다.
- (3) 축전기 : 고압축전기는 조사 지정 단위가 KVA이고 저압축전기는 mF이다.
- (4) TV 수상기 : 흑백TV, 칼라TV로 구분하고 규격판에 그 크기(인치 수)를 명시 조사한다.
- (5) 라디오수신기 : 카(CAR) 라디오와 일반 라디오로 구분조사  
※ 카스테레오 : 가. 녹음재생만되고 녹음불가 라디오 미 부착은 대상외  
나. 녹음불가 라디오부착은 카라디오로 조사.
- (6) 확성기 : 전기적신호를 음향으로 변환하는 기능의 전자부품으로 TV, 라디오, 전축, 스피커 등을 조사한다.
- (7) 앰프 : 특히 전축과 구분조사할 것 (앰프만 별도를 하되는 것)

※ 앰프 10대 생산하여 전축조립 3대 별도를 하 6대일 경우 :

품목명	단위	생산량	자가소비량	출하량	월말재고
앰프	대	10	3	7	1

- (8) 전화교환기 : 교환취급 차에 의해서 조작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동식(PABX)과 수동식(PBX)로 구분조사되며, 자동식전화교환기의 조사지정단위는 "회선"이고 수동식전화 교환기는 "대"이다.
- (9) 직접회로( IC ) : 1~2mm각의 실리콘 결정가운데에 TR 다이오드, 저항콘덴서등의 코일 부품을 접속도선을 사용치 않고 승착시켜 이루어진 회로로 조사지정단위는 "천개"이다.
- (10) TR : 소형 라디오가 아니며 3극이상의 전공관과 동일한 작용을 갖는 반도체 부품으로 전류증가 소자이며 재료에 따라 :

(1) 젤 마니움 다이오드 (2) 실리콘 다이오드로 대별된다.

- (11) 콘덴서는 고정콘덴서( 진해콘덴서, 세라믹콘덴서, 프라스틱콘덴서, 오일콘덴서, MP콘덴서, Mea(운모)콘덴서등)와 가변콘덴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조사단위는 천개로 한다. ( M/F로 조사하지 말 것 )

산업소분류 384 운수장비 제조업

- (1) 철강화물선, 목조어선 등의 수리품은 조사에서 제외되며 철강화물선, 철강유조선, 철강어선은 각각 구분하여 조사하며 병동선, 부선 토운선 등 철강선박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 (2) 자동차스프링은 의자(시트)용 스프링은 제외되며 차체 하부에 부착

되는 스프링만을 조사하되 고밀형 스프링과 증판스프링으로 구분조사 한다.

**산업소분류 385 달리분류되지않은 전문, 과학, 측정및제어 장비의사진및광학제 품**

390 기 타 제 조 업

- (1) 손목시계, 패종시계, 손목시계케이스, 탁상시계등을 각각 구분 조사한다. 단, 특수형시계(잠수기록용), 전기전자시계(온도설치용)는 조사에서 제외하고 전자손목시계와 손목시계는 구분하여 조사함. 전자벽시계는 패종시계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 (2) 젖퍼(작크)는 단위가 사업체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나 끄로환산 한다. 단위환산이 곤란할때는 원재료 사용량으로 환산함을 참고한다.

**광공업생산자 판매가격조사**

- (1) 의약품, 의복제조업, 등의 조사만을 "데프레이터"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계속 조사한다.
- (2) 제조업의 가격조사는 지정된 단위, 품질, 및 규격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3) 판매 가격동락의 요인을 척도판에 꼭 기입하여야 하며 요인은 생산비(원료·임금)와 수요 및 공급, 그리고 기타의 여건 등 상세하게 분석을 하여야 한다.

(4) 판매가격 신출은 공장도 출하가격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세, 유류세 등 기타 세금을 포함시킨 가격이며 정상거래를 전재로 한 가격만 조사 한다.

(5) 수출가격은 F.O.B 가격을 조사하여 반드시 달라로 조사한다.

#### 고용 및 급여

(1) 임시 종업원은 생산종업원, 사무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토록 할 것, 또한 자영업주나 무급가족종사는 기입에 차오없도록 할 것.

(2) 월 출연근무인원수는 일일종업원수의 누제인데 일반적으로 월말 종업원 수마다가 초업일수를 곱해주고 있는데 이는 편법이므로 인사 및 경리취급 담당에게 구체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실제 연근무인원수를 조사토록 한다.

(3) 고용 및 급여액에 차가 있을 경우 변동요인을 비교란에 기입하는데 추석보너스, 김장보너스, 기별보너스, 정기급여인상, 능률급, 자급 등을 기입한다.

#### 원재료, 연료 및 동력

(1) 원재료 조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원재료명의 해설에 관한 별도의 설명이 없는한 제품조사의 그것에 준하여 조사한다.

(2) 면사: 순면사, 면혼방사를 포함.

- (3) 소모사 : 순소모사, 혼방 소모사를 포함.
- (4) 화학섬유사 : 학성섬유방적사, 재생섬유방적사, 애세테이트사, 혼방합성섬유방적사, 이망사, 화학섬유 연사를 포함.
- (5) 면직물 : 순면직물만 조사
- (6) 화학섬유직물 : 재생섬유직물, 순 합성섬유직물을 조사
- (7) 혼방직물 : 면·혼방직물, 모·혼방직물, 혼방 합성직물 포함.
- (8) 특수강 : 철강은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구분되며, 탄소강 중에서 고탄소강, 합금강 중에서 고합금강을 특수강으로 조사한다.  
용도별로는 탄소공구강, 고속도강, 내열내식강 등을 말하며 각종 절삭공구, 베이킹, 스프링과 같은 기체의 특수부품, 그리고 피아노선용 접봉침선 자석 등에 사용된다.  
단, 합금강 중의 저합금강은 저탄소강과 같이 특수강에서 제외하며, 특수강으로 취급되는 고합금강이 라도 규조강판, 스테인리스판과 같이 별도로 조사되고 있는 품목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 (9) 황동 : 황동은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동과 아연 합금이다.  
일명 놋쇠 또는 진유라고도 하며 희(塊), 판(板), 봉(棒)을 포함하여 조사한다.
- (10) 알미늄박 : 알미늄박은 제 1차 비철금속제품의 알미늄박판을 말한다.  
(0.2 mm 미만)
- (11) 알미늄판 : 알미늄박은 제외한다. (0.2 mm 이상)

- (12) 인청동판: 둥에 인과 주석을 입힌 합금판으로, 인(10~15%)과 주석(3~7%)이 합금된 철판.
- (13) 비철금속 제품중 동, 알미늄, 아연 등이 서로 합금된 것은 함유량이 가장 큰 제품속에 포함시킨다.
- (14) P.C.B원판( Printed Circuit Board ): 트랜지스터나, T.V등에 사용되는 회로판으로 표면은 동으로 도금되어 있으며 어-스(earth) 역할을 한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규격은 1m×1m인 것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15) 강반성품은 스판드, 비렛트(Sheetbar), 보룸, 핫코일(Hot coil)을 포함한다.
- (16) 광업사업체는 원재료조사시 경목과 폭약 두가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 (17) 연료 및 동력이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사용되는 품목을 혼동하여 매월 사용품목이 바뀌어 보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점을 유의하여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부록 II. 광공업동태 조사 지정 품목 분류

- (1) 이 분류표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품목을 산업소분류별로 계재하고 있다.
- (2)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두 가지 단위(, )로 기입된 품목은 반드시 두 가지 단위에 따라서 병행 조사 보고해야 한다.
- (3) 그 사업체가 소속하는 산업소분류의 대상 품목 전부를 접토하여 그 사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해당되는 품목을 골라야 한다.
- (4) 그 사업체의 주요 제품을 이 분류표에서 발견하지 못하거나(종전파는 다른 품목을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이런 경우가 많음) 또는 이 분류표상의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가 불분명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명칭대로 기입하되 그 명칭은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예: 가정용 전기세탁기라 기입하는 것은 좋으나 이를 가정용 전기 세탁기와 같이 기입하는 것은 너무 박연하다.)
- (5) 두 개 이상의 품목을 한란에 결합하여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예: 간장과 된장을 생산하는 경우라면 이들을 각각 단란에 기입한다. 「간장 및 된장」이라 하여 한란에 기입하면 안 된다.)
- (6) 플라스틱 제품(223)은 %으로 조사하고 동시에 식기 및 용기(223-1, %), (223-2, 천족), 필립(223-3, %), 파이프 및 판(223-4, %), 폐지(223-5, m)으로 구분 조사한다.

(7) 이 분류표의 단위란에 사용된 약호는 다음과 같다.

g : 그램 ( gram )

kg : 칼로그램 (= 1,000 g)

% : 베트릭톤 (= 1,000 g)

S/T : 쇼트톤 (= 907 kg)

HP : 마력

G/A : 갈론 (gallon)

m : 미터 (meter)

m<sup>2</sup> : 평방미터 (가로와 세로가 각 1 m인 넓이)

m<sup>3</sup> : 일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 m인 부피)

S/F : 스퀘어 퀘트 (square feet)

ℓ : 리터 (liter)

kl : 킬로리터 (= 1,000 ℓ)

G/T : 그로스톤 (용척톤 100 ℥ = 1 G/T)

KVA : 키로볼트암페아 (Kilo Volt Ampere)

mf : 마이크로 파라드 (micro farad)

가. 광공업동태조사 지정품목분류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 광 업		
	중분류 21. 석탄광업		
	210. 석탄광업		※ 광업조사표는 판매처를 필히 기입할 것
001	동 연 탄	%	청청하고 크기도 고르고 선 별한 것(접착제 없이 응집 한 것은 포함하나, 접착제로 만든 것은 제외) (기준열량 4800~5000 kcal)
	중분류 22. 금속광업		
	230. 금속광업		
002	철 광 석	%	Fe 56%(석철광, 자철광, 갈철광, 기타철광)
003	중 석 광 석	%	W <sub>o</sub> 70%(흑중석, 회중석, 기타중석)
004	금 광 석 (금괴)	g	Au99.9% 금괴
005	은 광 석 (은괴)	kg	Ag99.9% 은괴
006	동 광 석	%	Cu 15%(휘동광, 황동광, 반동광, 남동광, 공작석 등)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이며 동매트( Copper Matt)는 제외
007	연 광 석	%	Pb 50% (방연광, 백연광, 황산연광, 기타연광)
008	아 연 광 석	%	Zn 50% (십아연광, 흥아연광, 탄산아연광)
009	몰리브데늄광석	kg	MoS <sub>2</sub> 90% (취수연포함)

#### 29. 기타광업

#### 290. 기타광업

010	석회석	%	CaO 50%
011	모래	m <sup>3</sup>	건설용 및 산업용모래 (금속함유 모래는 제외)
012	찰	m <sup>3</sup>	
013	يوجد	%	SK#34 (백토포함)
014	석	%	SK#32 (설화석고의 일종으로 조작용 연성워즈질의 광물)
015	석	%	CaF <sub>2</sub> 80% (천연방정석, 치오라이트( Chiolite )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16	인상흑연	kg	FC 75%
017	토상흑연	kg	FC 75%
018	활석	kg	기준품위 없으며 각급으로 조사
제조업			
충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311-312. 식료품제조업			
019	쓰세지	kg	육류와 소麦분 등을 주 원료로 한 것으로 오뎅이나 어묵 등을 제외한 다.
020	연유	kg	청정유 및 시유제의
021	분유	kg	물트우유 포함(청정유 및 시유 제외)
022	아이스크림	kg	하드류 제외
023	체리우유	kg	시유(목장우유)를 말한다(비타민 미내탈염 등이 첨가된 것 포함)
024	유산균발효유	kg	과일즙이 첨가된 것도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25	농 산 물 통 조 림	%	비타류 포함
026	해 산 물 통 조 림	%	꽁치, 고등어, 연어, 조개 등 수산물통조림
027	냉 동 해 산 물	%	(빙장, 냉장 및 원양어선 에서 제조된 냉동물제외)
028	대 두 유	kg	
029	마 아 가 린	%	
030	소 텅	%	
031	밀 쌀	%	
032	밀 가 루	%	관, 민수용 포함조사 밀가루빵, 그루레빵, 옥수수 빵, 맥아빵 등 각종 빵 (생파자, 케이크, 파이 등 제외)
033	식 빵	%	
034	전 빵	kg	
035	전 과 자	%	밀가루와 설탕을 주원료로 하여 구운 과자임. (비스킷이라고도 하며 쿠 키, 크래커, 웨퍼어스 등이 포함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36	라 면	kg	
037	정 당	kg	
038	설탕 과자	kg	설탕, 물엿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시킨 것, 초콜리트, 캔더, 캐러멜, 드 롭프스, 젤리 등의 양과자를 조사하되, 유과·다식 등 우 리나라 고유의 과자는 제 외
039	껌	kg	
421	축산물 통조림	kg	
422	된 장	kg	
423	인공감미료	kg	
040	인조일음	kg	
041	간 장	kg	
042	글루타민산소다	kg	
043	녹말가루(전분)	kg	옥수수, 밀, 쌀, 감자, 마니옥 껍뿌리 등에서 추출된 녹말 가루로서, 반제품인 수전분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44	식 용 포 도 당	%T	
045	물 엿	%T	단위는 %로 환산할 것 ( 엿 제외 )
046	분 말 커 피	kg	분말커피, 레귤러커피, 원두 커피 모두 포함 조사
047	분 말 인 삼	kg	
048	이 스 트	kg	생이스트 드라이이스트 포함
049	배 합 사 료	%T	배합사료의 원료(밀기울, 대두박 등)만은 조사하지 않으며, 반드시 배합된 사 료를 조사한다. 화학사료 는 제외 한다.
313 음료품제조업			
050	주 정	kl	
051	소 주	kl	
052	탁 주	kl	
053	청 주	kl	합성청주 포함
054	포 도 주	kl	디저어트포도주, 탄산포도주, 향미포도주 포함
055	맥 주	kl	합성맥주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56	사 이 다	kg	
057	콜 럭	kg	
058	쥬 스	kg	순수한 과일즙 음료와 풀 레버음료 포함 조사(분말 쥬스는 제외)
424	누 륙	kg	
425	엿 기 름(액아)	%	
314	담배제조업		
059	필터 달린 담배	백만본	
060	필터 없는 담배	백만본	
061	각 연	%	
426	재건조 일 담배	%	

충분류 32. 섬유, 의복 및 가죽산업

321. 섬유제조업

062	생 사	kg	
063	면 사	%	면혼방사 포함
064	방 모 사	kg	수모방적사 제외
065	순 소 모 사	kg	수모사 제외
066	혼 방 소 모 사	kg	

품목번호	품 목 등 카 품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67	합성섬유방적사	%	Stretch(스트레치)사, Nylon(나이론)사, Filament(필라멘트)사, 폴리에스텔사, 데포린울직사, 카시미론사, 아크릴릭사, 中細絲(중세사: 단 Fiber 는 제외)
068-1	기타재생섬유방적사	%	아세테이트사 제외
068-2	아세테이트사	kg	
069	혼방합성섬유방적사	%	모와화섬은: 60(화섬): 40(모) 견파 " : 70(화섬): 30(견) 화섬과 화섬은: 등분율 이상 차지한 화섬명을 우 선호칭
070	견방사	kg	견방적사, 견사, 견수방사, 주방사 포함 (단 견혼방사는 제외할 것)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71	화학섬유연사	kg	재봉사, 편물사 등 화학섬유 연사만 주사, 혹전연사, 연신사, 의장연사 도, 연사로 분류
072	담 요	m <sup>2</sup>	
073	타 을	kg	위생용타을, 세면타을, 흑흑 타을, 해수욕타을 포함
074	화섬사 양 말	천 족	화섬 60% 이상 양말, 팬티스 타킹, 타이스 포함(순면, 순 포 양말 제외)
075	메리야스내의	천 매	동대의 포함
076	메리야스외의	천 매	편물외의 (재단재봉한 것 제외) 수면 또는 원직물로 된 웨타류 포함.
077	로우트	%	
078	어망사(연승)	kg	연승이라고도 하며 반드시 연사한 것을 말함. 연사하지 않은 어망 사용 실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079	여 망	kg	
080	면 직 물	천 m <sup>2</sup>	면 혼방직물 제외
081	순 소 모 직 물	천 m <sup>2</sup>	all Wool로 된 소모직물
082	방 모 직 물	m <sup>2</sup>	방모사로 짠 직물
083	모 혼 방 직 물	천 m <sup>2</sup>	
084	순 본 견 직 물	천 m <sup>2</sup>	홀치기원단, 시보리원단, 하오리원단, 쓰무기원단, 양단 등 포함
085	견 혼 방 직 물	m <sup>2</sup>	견방사 및 생사와 타섬유사 가 혼방되어 짠 직물을 말함. 이 때 견(생사) 30% 이상이어야 함.
086	순 합 성 섬 유 직 물	천 m <sup>2</sup>	
087	혼방 합 성 섬 유 직 물	천 m <sup>2</sup>	나이론, 다후다, Jersey (저지), 양고라, 포리비스, 캐미칼, 트리코트라고 일 반적으로 호칭됨
088	재 생 섬 유 직 물	천 m <sup>2</sup>	인견 양단이라고도 함.
089	휠 터	kg	
090	타 이 어 코 드사	kg	
427	천 막	개	
468	아 마 사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22. 의복제조업(신발제외)			
091	의복류	백만원	
323. 가죽, 대용가죽 및 모피제품제조업(신발과 의복제외)			
092	소 가죽	천 m <sup>2</sup>	
093	비닐제트렁크(가죽포함)	개	피혁, 합성피혁, P.V.C로 만든 제품만 조사
094	핸드백	천 개	피혁, 합성피혁 P.V.C 로 만든 제품만 조사 ( 학생용, 여행용 가방, 구슬백은 제외 )
428	기계용가죽벨트	m/Ply	
324. 신발제조업(성형고무 또는 플라스틱신발 제외)			
095	남자용가죽신	족	소아용 가죽신 제외(육군 단화 포함)
096	여자용가죽신	족	소아용 가죽신 제외
097	군화 및 가죽장화	족	가죽으로 된 목이 긴 신, 장글화, 작업화, 등산 화, 플프화, 가죽부츠 등을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중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가구 포함 )			
331. 나무 및 나무와 콜크제품			
제 조 업( 가구 제외 )			
098	각 재	m <sup>2</sup>	소할재 제외
099	판 재	m <sup>2</sup>	소할재 제외
100	장지문 개		건축시에 소요되는 각종 목재 문짝을 말함. 규격은 보통 가로 3~4자, 세로 5~6자 이상의 것 을 조사하되 대문은 제외
101	합판	m <sup>2</sup>	
102.	재생목재	m <sup>2</sup>	파이버보오드( 인슐레이션 보오드, 하드보오드 )와 파티클보오드( 칩보오드 ) 등 식물성 섬유나 목재의 조그만 파편을 접착하여 성형시킨 것
332. 가구 및 장치물 제조업 ( 금속가구제외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103	장 농	개	순수한 장농민을 조사 (찬장 및 대형서가 제외)
104	식 탁 (상 포함)	개	
105	화 장 대	개	
106	의 자	개	소파는 조사에서 제외
107	책 상	개	탁자, 티테이블 제외

34.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인쇄 및 출판업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108	쇄 목 떨 프	kg	
109	화 학 떨 프	kg	
110	신 문 용 지	kg	
111	백상지 (모조지)	kg	
112	충 질 지	kg	챙지, 그라비아용지, 로루 지 등 각종 인쇄 및 필기용지
113	아 트 지	kg	
114	크 라 프 트 지	kg	
115	잘 포 벽 지	천 m <sup>2</sup>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116	창호지	권 (2,000매)	
117	화장지	kg	
118	박엽지	M/T	
119	판지	M/T	
120	풀판지	M/T	라이나원지( A.B.K원지 ) 중심원지 포함
121	풀판지상자	천 m <sup>2</sup>	
122	크라프트지대	천매	시멘트, 밀가루, 설탕포대, 사료 등의 종이포대
123	판지상자	천 m <sup>2</sup>	접어서 만든 판지상자와 짜맞추는 판지상자
124	벽지	천 m <sup>2</sup>	린크러스타( Linerusta ) 포함
125	금속박지	kg	
126	권연지	kg	
429	장판지	m <sup>2</sup>	
430	인화지	kg	
342. 인쇄, 출판 및 광현산업			
127	일간신문	천부	
128	비일간신문	천부	
129	정기간행물	천권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130	서 족	천권	
131	노 트	천권	장부, 일기장, 회계장, 연습장 등 제외
132	앨 범	천권	졸업앨범 등의 사진인쇄 앨범 제외
133	일반인쇄물	연	

충분류 35. 화학물과 화학, 석유, 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351. 산업용화학물제조업

134	에 티 렌	%	
135	프로피렌	%	
136	부타디엔	%	
137	싸이크로헥산	%	
138	벤젠	%	
139	토루엔	%	
140	키시렌	%	
141	VCM	%	염화비닐모너머
142	메타놀	%	나무나프타(조메틸알콜)는 제외
143	호루마린	%	포름알데이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144	스 테 아 린 산	kg	
145	무 스프 탈 산	kg	
146	아크릴로니트릴	kg	아크릴로니트릴클리퍼 및 코플리퍼는 제외
147	카 프로 락 담	kg	
148	염 산	kg	35%로 환산할 것
149	황 산	kg	98%로 환산할 것. 발열 황산인 올레움(oleum) 포함
150	가 성 소 다	kg	100%로 환산할 것
151	소 다 회	kg	탄산나트륨 무수탄산소다
152	산화티타늄	kg	
153	암 모 니 아	kg	
154	카 바 이 드	kg	탄화칼슘
155	암 축 산 소	t	
156	아세칠렌개스	kg	
157	염 루	kg	
158	유 안 비 루	kg	
159	요 소 바 루	kg	
160	용 성 인 비	kg	
161	용 파 린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162	복합비료	㎘	규산질비료제외
163	살충제	㎘	
164	살균제	㎘	
165	제초제	㎘	
166	S B R	㎘	NBR 제외
167	요소수지	㎘	
168	폴리에칠렌 (P.E)	㎘	
169	폴리프로페렌 (P.P)	㎘	
170	폴리스티렌 (P.S)	㎘	
171	P V C	㎘	
172	세로판지	㎘	
173	아세테이트섬유	㎘	아세테이트 Tow 포함
174	나이론섬유	㎘	나이론 Staple Fiber 포함 나이론 Staple Top 포함
175	폴리에스터섬유	㎘	폴리에스텔 Staple Fiber 포함 폴리에스텔 Staple Top 포함
176	아크릴릭섬유	㎘	아크릴릭 Staple Top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아크릴릭 Staple Fiber 포함
469	알 칠 벤 젠	kg	
431	아세트 알데 히드	kg	
432	가 소 제	kg	
433	규 산 질 비 료	kg	
434	메 라 닌	kg	
435	비 스 코 스 섬 유	kg	
436	포리프로페렌 섬 유	kg	

352. 기타 화학제품제조업

177	바 니 스	ℓ	
178	락 카	ℓ	
179	에 나 멜	kg	
180	유 성 폐 인 트	kg	
181	수 성 폐 인 트	kg	택스포함조사
182	의 약 품	백만원	
183	세 탁 비 누	kg	분말세탁비누 포함
184	화 장 비 누	kg	
185	글 리 체 린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186	세 탁 용 합 성 세제	kg	( 고형세제·분말, 액체포함 )
187	치 약	kg	치분제외
188	화 장 수	kg	밀크로션류 제외
189	화 장 크 립	kg	크린싱크림, 쿨드크림, 영양 크림 등 각종 고형크림 조사
190	화 장 백 분	kg	고형 및 분말만을 조사한다 (화운데이션과 몸에 바르는 분 제외)
191	머 리 기 름	kg	포마드, 헤어오일, 헤어크림 포함 조사
192	다 이 나 마 이 트	kg	
193	초 안 폭 약	kg	초유폭약 제외
194	도 화 선	km	도폭선 제외
195	뇌 광	천개	공업뇌광, 전기뇌광 포함
196	성 낭	천갑	가정용, 식용 대형기준
197	카 본 블 랙	kg	순수탄소 포함
198	인 쇄 잉 크	kg	
199	향 료	kg	화장품향수제외
437	활 성 탄 소	kg	
438	접착제	kg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	-------	----	---------

353. 석유제제작업

200	제트유	kl	제트기판 및 항공기터빈 기판용
201	휘발유	kl	
202	나프타	kl	
203	동유	kl	
204	경유	kl	
205	중유	kl	방카C유 제외
206	방카C유	kl	
207	윤활유	kl	구리스, 식물성윤활유 제외
208	액화석유캐스	kg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제조업

209	각종연탄	kg	
210	코크스	kg	페코크스, 분코크스
211	아스팔트	kl	
439	루핑지	kg	

355. 고무제품 제조업

212	자동차용타이어	본	모터싸이클용타이어 제외
213	자전거용타이어	천본	모터싸이클용타이어, 어린이 용 삼발자전거타이어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14	자동차용튜우브	본	
215	자전거용튜우브	천본	모터사이클용튜우브 제외
216	재생타이어	본	
217	고무신	천족	
218	고무장화 및 우화	천족	
219	운동화	천족	훈련화(통일화), 노동화 포함
220	고무호스	m	
221	작종고무벨트	천Ply	
222	스폰지	m <sup>2</sup>	합성수지스폰지 제외

356.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3	플라스틱제품	㎘	
223-1	플라스틱제식기및용기	㎘	
223-2	플라스틱제신	천족	
223-3	플라스틱제필름	㎘	
223-4	플라스틱제파이프및관	㎘	
223-5	플라스틱레저	m <sup>2</sup>	
223-6	기타플라스틱제품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중분류 3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 )			
361.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업			
224	도자식기	천개	토기제품 제외
225	위생도기	개	( 전물내에 영구히 고정시키는 )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 욕조만 조사
226	고압애자	개	3300 V 이상 ( 전기스윗치용 제외 )
227	저압애자	개	3300 V 미만 ( 전기스윗치용 제외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28	판유리	상자	
229	유리술병	천개	화장품병, 석초병, 간장병, 꽃병, 니스병 제외
230	유리약병	천개	농약병 제외
231	유리식기	천개	세족잔, 양주잔, 소주잔, 재 멸이와 유리문구용품( 잉크 병, 잉크스탠드 등)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6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2	벽돌(소성)	천 매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 (오지벽돌 포함) 기준규격 1매 = 2.5kg
233	타일	천 $\frac{m^2}{m}$	오지타일, 내장타일, 외장타 일, 모자이크타일 포함 조사 (판석 제외)
234	내화벽돌	$\frac{m^2}{m}$	330매 = 1 $\frac{m^2}{m}$ (#8, K32)
235	내화울탈	kg	
236	포오틀란드시멘트	천 $\frac{m^2}{m}$	
237	백시멘트	$\frac{m^2}{m}$	
238	소석회	$\frac{m^2}{m}$	생석회, 수경생석회 제외
239	콘크리트블록	천 매	보도용 콘크리트블럭 조사 제외
240	콘크리트벽돌	천 매	
241	콘크리트광	본	
242	홈광	본	
243	콘크리트천주	본	
244	콘크리트파일	본	
245	콘크리트기와	천 매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46	레 미 콘	m <sup>2</sup>	
247	색 면 스 레 트	m <sup>2</sup>	
중분류 37. 제 1 차 금속 산업			
371. 제 1 차 철강 산업			
248	선 철	M/T	재생선철 제외
249	합금 철	M/T	망강철, 규소철, 크롬철, 몰리브데늄철, 너켈철, 규 소망강철, 텅크스텐철, 티타늄철 등
250	강 피	M/T	압연용 및 단조용의 보 통강피, 고탄소강피, 합금 강피
251	장반 성 품	M/T	스라브, 브룸, 비렛, 쉬트 바, 핫코일, 대강 등을 포함
252	주 강	M/T	용강을 최종목적제품의 형태로 된 주형에 주입 하여 제조한 강제품 (보통 고탄소합금강, 주 강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53	봉 강	MT	환강, 환철, 평강, 각강, 반월 강 포함
254	철 균	MT	이형철근, 원형철근 포함
255	형 강	MT	(angle) (chamel) 산형강, 구형강, L형강, 표형강, T형 강, I-빔
256	충 후 판	MT	3 mm 이상
257	박 판	MT	3 mm 미만
258	선 재	MT	BAR IN COIL 포함
259	강 판	MT	단형, 타단형, 각형으로 내부 가 비어있는 것 (무제목, 단접, 전봉, 전호용접)
260	주 철 판	MT	직판, 이형판 (십자판, T자 판, Z자판, 곡판, 단판) 주물용 선철로 제조 내부가 비어있는 것
261	가 단 주 물	MT	C <sub>2</sub> 의 함량이 적고 저린 (P) 저유황 및 0.2 ~ 0.5 % M <sub>2</sub> 을 함유하는 것 (표면이 흰회색)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62	기 계 용 주 물	㎘	철제 가마솥, 화로, 철구 등 제외
263	석 도 철 판	㎘	전기도금석도강판, 열지도금석도강판
264	아 연 도 철 판	㎘	(평판, 파판포함) 전기도금, 열지도금
265	와 이 어 보 프	㎘	
266	쇠 뜬 롯	㎘	천선으로 만든 것은 모두 포함(나사롯, 황동롯, 나무롯 등 특수롯 제외)
267-1	경 강 선	㎘	
267-2	P. C 강 선	㎘	
267-3	기 타 흑 철 선	㎘	경강선, P. C강선 제외
440	스 텨 래 스 소 털 판	㎘	
372. 제 1차 비철금속산업			
268	전 기 동	㎘	동ショ트, 해감봉 등 제외
269	알 미 늄 괴	㎘	
270	연 괴	㎘	
271	아 연 괴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72	은	kg	
273	금	kg	
274	동 판 및 광	%	단동, 황동, 청동판 및 광 포함
275	알미늄판	%	알미늄박 및 떠 제외
276	나동선	%	직경 6mm 미만
277	알미늄주물제품	%	

중분류 38. 조립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제조업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78	공장용수공구	천개	합마, 드라이버포함(송곳 제외)
279	농업용수공구	개	금속제만 조사(삽, 곡괭이, 팔이, 호미, 쟁기, 도끼, 포크, 작두, 낫, 전지기 등)
280	철제캐비넷	개	화일박스 제외
281	철제의자	개	틀이 금속으로 된 회전의자 및 침대겸용 의자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82	철 제 채 상	개	철제 탁상( 타자기용 탁상 ) 동 제외
283	전 불 용 문 및 수문	개	샷터 , 덧창 , 창틀 제외
284	전 축 용 샷 슈	kg	샷슈바 제외
285	보 일 려	대	색소날 보일러와 공업용 보일려로 구분 조사 ( 가정용 보일려는 제외 )
286	통 조 림 용 관	천 개	미술관( 과자캔 , 설탕캔 , 우유캔 등 ) 제외
287	드 럼 판	개	200ℓ 용기만 조사
288	알미늄 프레스 가공식기 및 용기	kg	주물제품은 알미늄 주물제 품( 277 )으로 조사할 것
289	스텐레스스틸제식기	kg	한식기와 양식기로 구분 조사
290	방 열 기	대	중앙난방용 방열기만 조사 ( 콘벡타 , 월히터 , 자동차 용방열기 ( 연소기기 부착 된것 제외 ) }
291	자동차용 방열기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292	석 유 스 토 브	개	콘로겸용은 포함( 콘로는 제외 )
293	불 트 및 낫 트	%	와셔, 리벳트 등은 제외
294	금 속 광 이 음 쇠	%	리벳트는 제외
295	철 사 망	%	철조망, 스토브망, 선풍기망, 방충망, P. V. C 입힌 유리 대용 등은 제외할 것
296	금 고	개	어린이 저금통 및 임시보관 용 수제금고 제외
297	자동차용코일스프링	개	차체 하부에 부착되는 스프링
298	자동차용충판스프링	천매	만 조사( 의자, 사제 및 기타의 스프링 제외 )
299	용 접 봉	%	
300	체 인	kg	연계체인과 주로 철판, 금속 대, 철선으로 만든 메트레스 체인, 싱크스토퍼 체인, 동력 천달체인 등만 조사항( 모조 장신구 체인은 제외 )
441	철 제 침 대	대	
442	샷 터	m <sup>2</sup>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82. 기계 제조업( 전기 제외 )			
301	내 연 기 판	대	석유, 알콜, 가스 등을 연 료로 하는 불꽃점화 및 압축점화용 내연기관만 조 사하고 선박 및 차량용은 제외 ( 발동기와 디젤기관을 내연기관으로 조사한다 )
302	동 력 탈 곡 기	대	
303	경 운 기	대	
304-1	동 력 분 무 기	대	농업용 분무기만 조사 〔 소형분무기 ( 가정용 )와 스프리건 제외 〕
304-2	인 력 분 무 기	대	"
304-3	동 력 살 분 무 기	대	"
305	농업용 트랙터	대	
306	선 반	대	나사선반, 터렛선반, 카평선 반 등 포함
307	프 래 스 기	대	유압식프레스기 및 샤링기, 펀칭기, 노칭기, 벤딩기, 압 출프레스기, 인반기, 금속스 피닝기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08	압 출 기	대	
309	압 연 기 률	kg	칠드를이나 압연용률 포함, 곡물분쇄용 고무를 제외
310	철 삽 공 구	천개	금속공장용 철삽공구만 조사 하고 나무공장용 및 기타재 료공작용 철삽공구는 제외
311	연 사 기	대	합사기는 제외
312-1	면 칙 기	대	
312-2	전 칙 기	대	
312-3	기 타 칙 기	대	각종 칙물을 짜는 칙기를 포함
313-1	횡 편 칙 기	대	
313-2	환 편 칙 기	대	
313-3	기 타 편 칙 기	대	횡편직기와 환편직기 제외한 기타 편직기만 조사
314	종 광 틀	천개	
315	샷 틀	대	직기의 복
316	정 미 기	대	현미기, 암맥기, 제분기 등 제외
317	정 맥 기	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18	활 판 인쇄기	대	평압식 인쇄기와 원통압식 인쇄기만 조사하고 석판인 쇄기, 옵셋인쇄기, 그라비아 인쇄기, 특수인쇄기 등은 제외한다.
319-1	탁상용 전자계 산기	대	
319-2	휴대용 전자계 산기	대	
320	타자기	대	사무용 타자기, 전동타자기, 공판타자기, 휴대용 타자기 를 포함
321	동력펌프	대	자동식 펌프, 양수기 포함 (수동식 펌프 제외)
322	공기압축기	대	
323	호이스트	대	
324	크레인	t	capacity ton을 조사 이동식 크레인, 정치형 크레 인, 교량형 크레인, 캔트리크 레인 등 (Cantrey) 포함.
325	엘레베이터	대	화물용은 제외
326	가정용 재봉틀	대	가정용 손틀, 발틀, 전기식 재봉기 포함.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27-1	일본침작선 본봉재봉틀	대	
327-2	오바로크 및 인타로크재봉틀	대	
327-3	기타공업용재봉틀	대	직물용재봉기, 가죽용재봉기, 포대봉합적재봉기 등 산업용 에 쓰이는 재봉틀을 포함
328	기어	개	자동차제동장치인 기어 제외
329-1	볼베어링	kg	스ラ스트베어링 포함 조사
329-2	로울러베어링	kg	
329-3	메탈베어링	kg	
329-4	기타베어링	kg	자동차용 메탈베어링, 엔진 베어링, 유니버설조인트 제 외
330	폐캐이지형에어콘 디쇼너	대	대형차장 공기조절 에어콘
331	원도우형에어콘 디쇼너	대	룸에어콘만 조사하고 ( 차량 용에어콘 ( 카쿨러 ) 제외 )
332	자동차용피스톤	개	산업용피스톤은 제외할 것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33	발 브	개	건축용, 기계용, 공업용만 포함 조사, (타이어튜브발브, 수도꼭지는 제외)
443	발 동 기	대	석유용만 조사할 것
444	인력 탈곡기	대	
445	염색기	대	
446	열교환기	대	
447	연탄제조기	대	
448	콘베어	대	
449	송배풍기	대	
450	스핀들	개	직기부품
451	링	개	직기부품

### 383. 전기 기계 기구 제조업

334-1	직류전동기	HP	내연기관용 전동기 및 수리품 제외
334-2	교류전동기	HP	내연기관용 전동기 및 수리품 제외
335	변압기	KVA	송배전용 및 기계용 등 장전용 변압기만 조사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36	시동전동기	대	(약전 초인종 등과 같은 제기용 변압기의 소형 및 수리품은 제외)
337	고압축전기	KVA	시동모터(기판에 임시로 연 결시키도록 기계장치가 부착 된 소형전기 모터)(내연기 관용으로 통상직류)
338	저압축전기	MF	전기산업의 여러분야에 사용 되는 것으로 산업기기를 위 한 축전기
339	흑백 T.V 수상기	대	T.V게임 및 공업용(ITV), 학술조사용 등 특수분야 유선 T.V 제외
340	칼라 T.V 수상기	대	T.V게임 및 공업용(ITV), 학술조사용 등 특수분야 유선 T.V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질 및 규격
341-1	일반용 라디오수신기	대	트란지스터 라디오, 시제부착 라디오, 기타라디오 포함
341-2	카 라 디 오 수 신 기	대	카스트레오는 라디오가 부착 된 것만 포함 조사 ( 녹음불가, 라디오 미부착은 대상외 )
342	전 축	대	앰프, 턴테이블, 플레이어, 스피커 등이 조립되어 있 는 것
343	녹 음 기	대	카셋트녹음기, 라디오부착 녹음기 포함. ( 녹음불가, 녹음재생기: 카스테레오 제외 )
344	락 성 기	천 개	T V, 라디오, 전축, 스피커 등을 조사. ( 트란지스터 메가폰, 학교·야외연락용으 로 쓰이는 나필형, 대형 및 헤드폰, 전화기구용 등 소형은 제외 )
345	앰 프	대	인터폰 등에 사용되는 소 형앰프는 제외 ( 출력 10Watt 이하는 음성증폭기로 조사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46	T V 투 너	개	T V 수상기의 체널 선택장 치로 VHF 투너, UHF 투너 조사.
347-1	자동식 전화기	대	체신 1호 표준형 전화기와 다이얼이 보통식으로 대체되어 외부(전화국)와 연결통화되는 키Lon 및 수출용인 장식용 전 화기 포함 조사(인터넷이나 무 선기 등 제외)
347-2	자석식 전화기	대	
347-3	공전식 전화기	대	
348	수동식 전화교환기	대	자석식교환기, 공전식전화교 환기(군야전용교환기, 국소형은 제외)
349	자동식 전화교환기	회선	크로스바교환기, 전자교환기 등 조사
350-1	흑백 브라운관	대	T V 수상기의 영상신호를 화면으로 변환시키는 음극
350-2	컬러 브라운관	대	선관(판측용 브라운관, 절 환관, 프린트관, 축전관 및
			T V용 브라운관중 수리품 은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51	계 수표시 방전판	천개	반제품 MOUNT 제외조사
352-1	웰마니움다이오드	천개	전자회로중 검파장류작용을
352-2	실리콘다이오드	천개	하는 반도체부품임. ( 시그널다이오드, 전력용 정 유다이오드, 전압조절다이오드, 터널다이오드 등 포함 )
363	집적회로(IC)	천개	후막집적회로, 피막집적회로, 반도체 집적회로, 혼성집적회로 포함조사
354-1	웰마니움트랜지스터 ( T . R )	천개	
354-2	실리콘트랜지스터 ( T . R )	천개	
355	카변저항기	천개	저항치를 임의로 가변할 수 있는 부품 ( 탄소피막, 금속피막, 권선형, 가변저항기 등 조사 )
356	고정 저항기	천개	탄소피막, 금속피막, 탄소체 혼 합, 권선고정 저항기 등 조사
367	가변 콘덴서	천개	전자기기용으로 전자기기용이 아닌 것은 축전기로 조사할 것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58	고정콘멘서	천개	전자기기용으로 전자기기용 이 아닌 것은 축전기로 조사할 것.
359	기역초자	개	
360	마그네틱해드	천개	
361	래코드판	매	
362	녹음테이프	천개	자기녹음테프로서 녹음된 테프 포함 조사하되 60 분용( C - 60 )으로 환산 조사 기재한다. ( C - O는 제외 )
363	전기냉장고	대	용량별로 구분 가정용만 조사( 아이스박스, 냉동기 제외 )
364	선풍기	대	환풍기 제습기 제외
365	전기세탁기	대	가정용전기세탁기만 조사
366	전기스토브	대	식품가열용 장치 제외
367	전기믹서	대	산업용 제외, 가정용만 조 사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68	전 기 밥 솔	개	전기밥솥과 전기보온밥통 겸용은 전기밥솥으로 조사할 것
369	전 기 보 온 밥 통	개	
370	통신선 및 통신용 케이블선	%	각종 철연전화전신선 및 전자선 케이블선 조사
371	전력선 및 전력용 케이블선	%	각종 전력용선 및 전력용 케이블선 조사
372	백 열 전 구	천 개	제품의 규격을 반드시 명시 15W 이상의 조명용만 조사 ( 크리스마스츄리옹 등 15W 이하 소형전구 제외 )
373	형 광 전 구	천 개	직원형광등, 환형형광등 포함 조사( 네온사인, 가스방전관 및 구( 수은등 ) 헬륨, 알곤가스, 크세논 등 기타 방전관 제외 )
374	축 전 지	개	전류를 흐르게 하면 화학적 변화가 역행 충전이 생기는 것 으로 전전지와 구분되는 2차 전지임 ( 남산축전기와 알카리축 전지 조사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75	전 전 치	천 개	충전재생할 수 없는 1 차 전지(불항성전지, 습 전지, 농축전지, 카본전극봉 제외)
452	정 류 기	대	
453	전 기 용 접 기	대	
454	무 전 기 (트랜시버)	대	트랜시버, 위키토키 등 (송·수신거리 500m이내 어린이용완구 제외)
455	레 더	개	
456	음 성 증 폭 가	개	인터폰 등에 사용되는 소형 앰프류( 출력 10Watt 미하)
457	냉 동 기	E/T	
458	소 키 트	개	
459	발 전 기	kw/대	
460	배 전 반	면	
461	고 압 차 닫 기	대	
462	저 압 차 닫 기	대	
384.	운수장비제조업		
376	선박용 내연기관	HP	선박용 디젤기관+소우기 파.조사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77-1	철 강화물선	G/T	바지선 포함
377-2	철강유조선	G/T	
378	철강어선	G/T	포획활동을 하지 않고 가공활동만 하는 부유생선공장선 및 고래가공선 포함 조사(수리품 제외)
379	목조어선	G/T	"
380	여객차	량	수하물차, 침대차, 식당차, 포함 조사(영원차, 죄수차, 겸사차 및 기타 특수목적 차량 제외)
381	화차	량	무개차(콘도라) 평저차, 유개차, 유조차, 냉장차 및 연체장치가 결합된 광산차 도 포함
463	광차	량	지하광산에서 조작하도록 설계된 기관차(외부전력, 축전자전력, 내연기관으로 가동)
382	완충기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83	철 도 차 양 류	개	전차 및 천정크레인의 윤심, 강재의 바퀴 포함( 압 연제품, 제조물주장( 단조 및 주강품.) 제외 )
384	승 용 차	대	Jeep 포함
385	소 형 트 렉	대	$\frac{1}{2}$ 톤 이상~4톤미만
386	중 형 트 렉	대	4톤이상~8톤미만
387	대 형 트 렉	대	8톤이상
388	소 형 버 스	대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마이크로버스 )
389	대 형 버 스	대	25인승 이상
390	자동차용내연기관	대	
391	자 동 차 류	개	
392	차 축	개	
393	자 전 거 차 체	대	
394	자 전 거 링	개	리어커링 제외
395	모 터 쌔 이 류	대	모타스쿠터, 오싸이 클플프차, 눈차 및 기타특수목적차 제외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385. 딜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 측정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396	온 도 계	개	알콜 및 수은으로 된 실내 및 실외온도계 ( 산업봉온도계 , 금속온도계팽창 , 압력온도계 , 자기온도계 제외 )
397	적 산 전 력 계	대	전력소비량측정계기 , 단상 및 다상교류전계직류전산전류계 포함
398	수 도 미 터	개	가스미터기 제외
399	안 경 테	천개	
400	복 사 기	대	청사진 , 복사기 제외
401	쌍 안 경	개	완구쌍안경 ( 어린이용 )제외
402	광 학 용 렌즈	개	안경렌즈 포함
403-1	일 반 손 목 시 계	개	전자벽시계를 제외
403-2	전 자 손 목 시 계	개	
404	벽 시 계	개	전자벽시계 포함 ( 계기판시계 ( 옥외설치용 전기시계 ) 특수용시계 ( 예 , 집수기록용 ) 제외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405	탁 상 시 계	개	전자탁상시계 포함조사
406	손 목 시 계 케 이 스	개	
464	사진기 ( 카메라 )	대	
중분류 39 기타제조업			
390. 기타 제조업			
407	피 아 노	대	
408	올 켄	대	전자올Ken 제외
409	기 타	대	전자기타 제외
410	야 구 장 잡	개	스키용장갑, 겸도용장갑 제외
411	만 년 펠	개	
412	볼 펜	천 개	
413	면 펠	천 타	색연필 포함
12타(打) = 1 Gross =			
144자루			
414	철제우산 및 양산살대	천 개	죽제품살대 제외
415	가 발	천 개	
416	인 조 눈 섭	천 개	인조속눈썹 포함
417	라 이 타	개	
418	인 형	개	천을 입힌 인형만조사 ( 목각 인형, 플라스틱인형, 트로피인 형, 각종 알미늄인형 제외 )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질 및 규격
419	작 크(지퍼)	천 m	프라스틱지퍼 재외
465	나전칠기공예품	개	
466	정 돈 모	kg	웨지털만 조사
467	낚 시 대	개	
4. 전 가업			
420	총발전량 및 판매량	백만kWh	

나. 광공업 동태조사 지정원재료분류표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대분류 2. 광업		706	설탕	kg
522	갱목	m	707	소기름(우지)	kg
778	폭약	kg	708	경화유	kg
	대분류 3. 제조업		818	통조림관	천개
	충분류 31.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313. 음료품제조업	
	311~312 식료품 제조업		501	보리(대액)	kg
502	밀(소액)	kg	502	밀(소액)	kg
503	콩(대두)	kg	504	고구마	kg
504	고구마	kg	517	호프	kg
505	소액파	kg	518	당밀	kg
506	탈지강	kg	701	보리쌀(정액)	kg
507	콩깻묵(대두박)	kg	702	밀가루(소액분)	kg
518	당밀	kg	703	옥수수(가루포함)	kg
519	생우유	kg	704	녹말가루(전분)	kg
525	어개류	kg	706	설탕	kg
702	밀가루	kg	710	주정	kg
703	옥수수(가루포함)	kg	711	콜라원액	kg
704	녹말가루(전분)	kg	712	엿기름(액아)	kg
705	원당	kg	749	탄산가스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80	향 료	kg	716	방 모 사	kg
790	유 릭 병	천개	717	화학섬유사	kg
314. 달배제조업			718	생 사	kg
516	잎 담 배	kg	719	면 직 물	m <sup>2</sup>
738	은 박 지	kg	720	순 소 모 직 물	m <sup>2</sup>
740	월 타	kg	721	순 방 모 직 물	m <sup>2</sup>
증분류 32. 섬유·의복 및 가죽산업			722	화학섬유직물	m <sup>2</sup>
321. 섬유제조업			723	혼 방 직 물	m <sup>2</sup>
508	원 면	kg	726	화학펄프	kg
509	누에고치(잠결)	kg	752	카프로락담	kg
510	지 부 양 모	kg	768	풀리에치렌수지	kg
511	세 쳐 양 모	kg	770	풀리프로피렌수지	kg
512	아 마	kg	771	화학섬유 (톱, 실, 화이버)	kg
513	아 바 카	kg	772	S . F . 면	kg
514	작 저	kg	774	A . N . 모 노 마	kg
515	모 설	kg	775	에치렌그리풀	kg
713	양 모 톱	kg	776	D . M . T	kg
714	면 사	kg	899	P . T . A	kg
715	소 모 사	kg	322. 의복제조업		

원재료 번호	자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자정 원재료명	단위
719	면 직 물	m <sup>2</sup>	728	판 재	m <sup>2</sup>
720	순 소 모 직 물	m <sup>2</sup>	729	합 판	m <sup>2</sup>
721	순 방 모 직 물	m <sup>2</sup>	충분류 34. 종이·종이제품·인쇄 제조업		
722	화 학 섬 유 직 물	m <sup>2</sup>	341.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723	혼 방 직 물	m <sup>2</sup>	521	원 목	m <sup>2</sup>
724	소 가 죽	m <sup>2</sup>	524	고 치	%
323. 가죽·대용가죽 및 모피제품 제조업			624	활 석 분	%
520	원 피	매	725	에 복 펄 프	%
724	소 가 죽	m <sup>2</sup>	726	화 학 펄 프	%
898	합 성 피 혁	m <sup>2</sup>	731	백 상 지	%
324. 신발 제조업			732	인 쇄 등 지	%
724	소 가 죽	m <sup>2</sup>	733	크 라 포 트 지	%
898	합 성 피 혁	m <sup>2</sup>	735	박 엽 지	kg
충분류 33.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736	판 지	%
331. 나무 및 나무와 쿨크제품 제조업			737	풀 판 지 원 지	%
521	원 목	m <sup>2</sup>	744	가 성 소 다	kg
758	호 르 마 린	%	751	유 산 반 토	kg
332. 가구 및 전구제조업			817	일 미 뉴 박	kg
727	각 재	m <sup>2</sup>	342. 인쇄·출판 및 관련업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730	신문용지	%	753	염화가리	kg
731	백상지	%	754	벤제진	kg
732	인쇄용지	%	755	툴루엔	kg
734	아트지	kg	756	키시렌	kg
735	박엽지	kg	758	호르마린	%
784	인쇄잉크	kg	759	페타놀	%
증분류 35. 화학물과 화학섬유, 석탄고무 및 플라스틱제 체조업			766	요소	kg
351. 신업용 화학물 체조업			788	날사	kg
614	유황	%	789	코크스	%
615	인광석	%	792	생석회	%
617	공업염	%	352. 기타화학제품 제조업		
618	석회석	%	706	설탕	%
741	황산	kg	707	소기름(우지)	%
742	염산	kg	709	야마인유	kg
743	카바이드	kg	710	주점(에타놀)	kg
744	가성소다	kg	738	온박지	kg
747	소다회	kg	741	황산	kg
748	암모니아	kg	742	염산	kg
750	V.C.M	%	744	가성소다	kg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745	규 살 소 다	kg	790	유 리 병	천개
747	소 다 회	kg		353. 석유제조업	
748	암 모 니 아	kg	603	원 유	kl
754	벤 젠	kg		354.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	
755	톨 르 앤	kg	601	무 연 탄	%
756	키 시 렌	kg		355. 고무제품제조업	
757	일 퀸 벤젠	kg	523	천연(생)고무	%
759	메 타 놀	%	714	면사(면사포)	kg
760	루스프탈산	kg	717	화학섬유사 (타이어코드사)	%
761	염 료	kg	773	합성고무	%
762	그리세린	kg	781	아연화	kg
763	지방산	%	782	산화티탄	kg
764	스테아린산	kg	783	카본블랙	kg
766	요소	kg		356. 텔리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77	스치렌모노마	kg	765	가소제(DOP, DBP등)	kg
779	초난	kg	767	P.V.C수지	kg
780	향료	kg	768	폴리에치렌수지	kg
781	아연화	kg	769	폴리스チ렌수지	kg
782	산화티탄	kg	770	폴리프로파렌수지	kg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종분류 36.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613	모래	m <sup>3</sup>	
	361. 도기·자가 및 토기제조업		618	석회석	%	
612	결토	%	619	고령토	%	
619	고령토	%	620	장석	%	
620	장석	%	621	규사 및 규석	%	
621	규사 및 규석	%	622	남석	%	
627	석고	%	625	형석	%	
	36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626	석면	%	
616	초석	%	627	석고	%	
618	석회석	%	726	화학펄프	%	
620	장석	%	739	크라프트지 대	천매	
621	규사 및 규석	%	791	시멘트	%	
625	형석	%	797	봉강(철근포함)	%	
628	백운석	%	802	철	kg	
629	판유리	%	종분류 37. 제1차금속 산업			
746	유산소오마(망초)	%	371. 제1차 철강 산업			
747	소다회	kg	602	원료탄(코크스제조용)	%	
	369. 기타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04	철광석	%	
612	점토	%	608	망강광석	%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 원재료명	단위
609	고 철	%	808	아 연 피	kg
618	석 회 석	%	809	일 미 늄 피	kg
789	코 크 스	%		충분류 38. 조립금속 제품	
793	선 철	%		381.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94	강 피	%	609	고 철	%
795	강반성품(스라브비레트, 핫코일보트, 대강등)	%	610	동 설	kg
798	충 후 판	%	611	일 미 늄 고 철	kg
799	박 판	%	789	코 크 스	%
800	주 물	%	793	선 철	%
	372. 제 1 차비철금속 산업		796	형 강	%
605	동 광 석	%	797	봉장(철근포함)	%
606	연 광 석	%	798	충 후 판	%
607	아 연 광 석	%	799	박 판	%
610	동 설	kg	800	주 물	%
611	일 미 늄 고 철	kg	801	선재(와이어로트)	%
618	석 회 석	%	802	철 선	kg
789	코 크 스	%	803	강 판	%
806	전 기 동	kg	804	특 수 강	kg
807	연 피	kg	806	전 기 동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7	연 파	kg	802	철 선	kg
808	아 연 파	kg	803	강 판	kg
809	알 미 늄 파	kg	804	특 수 장	kg
810	황 동(놋쇠, 진유)	kg	806	전 기 동	kg
811	일 미 늄 판	kg	807	연 파	kg
815	스 테 인 베 스 판	kg	809	알 미 늄 파	kg
816	동 선	kg	810	황 동(놋쇠, 진유)	kg
819	용 접 봉	kg	811	일 미 늄 판	kg
	382. 기계제조업		812	동 판	kg
809	고 철	%	815	스 테 인 베 스 판	kg
610	동 설	kg	816	동 선	kg
789	코 크 스	%	819	용 접 봉	kg
793	선 철	%		383. 전기기계기구제조업	
796	형 강	%	767	P . V . C . 수 지	kg
797	봉 강 (철근포함)	%	798	중 후 판	%
798	중 후 판	%	799	박 판	%
799	박 판	%	802	철 선	kg
800	주 물	%	804	특 수 장	kg
801	선 재 (와이어로트)	%	806	전 기 동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7	연 피	kg	798	중 후 판	%
808	아연 피	kg	799	박판	%
809	알미늄 피	kg	800	주물	%
810	황동(놋쇠, 전유)	kg	802	철선	kg
811	알미늄 판	kg	803	강판	%
812	동판	kg	805	대강	%
813	인청동판	kg	809	알미늄 피	kg
814	규소강판	%	819	용접봉	kg
815	스텐레스판	kg	825	트란스 및 손개	
816	동선	kg	826	자동차엔진	대
817	알미늄 박	kg	385	달리분류되지 않은 전문 과학용품 및 제어장비와 사진 및 광학제품	제조업
820	트랜지스터	천개	810	황동	kg
821	집적회로	개	815	스텐레스판	kg
822	브라운관	개	종분류 39. 기타제조업		
823	P.C.B. 원판	매	526	인도연	kg
824	자석(마그네트)	천개	623	혹	kg
384. 운수장비제조업			717	화학섬유사	%
796	형강	%	767	P.V.C. 수지	kg
797	봉강(철근포함)	%	771	화학섬유 (아세테이트로우)	kg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원재료 번호	지정원재료명	단위
802	철 선	kg		※ <연료 및 동력>	
803	강판	%	601	무연탄	%
810	황동	kg	785	경유	kg
815	스텐레스판	kg	786	중유	kg
대분류 4. 전기업			787	방카 C유	kg
601	무연탄	%	901	전력	천㎾h
787	방카 C유	kg			

다. 생활자 판매 가격조사 지정품목 일람표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격
322 의복 제조업			
322-01	동양복 (마춤 양복)	벌	순소모복지 사용 (제일모직 보통제품 사용)
322-02	하양복 (마춤 양복)	벌	모흔방복지사용 (제일모직제품, 폴리에스터 60~62%, 모 38~40%)
322-03	기성 양복	벌	모흔방복지사용 (폴리에스터 60~62%, 모 38~40% 수출용원단사용) 상, 하의 1벌 (조끼 불포함)
322-04	남자용 학생복	벌	화섬흑색 5호 (중·고교생용)
322-05	와이셔츠	매	백색, 목둘레 15", 긴소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322-06	잠바 (자켓)	벌	나일론 100%, 크기 (중), 성인용
322-07	마춤 숙녀복	벌	모흔방복지사용 (폴리에스터 60%, 모 40%, 제일모직제품, 성인용 투피스)
322-08	기성숙녀복	벌	모흔방복지사용 (폴리에스터 60%, 모 40%, 수출용원단사용 성인용투피스)
322-09	브라우스	매	(폴리에스터 65%, 면 35%, 긴소매여자 성인용)

품목번호	품 목 명	단 위	품 질 및 규격
322-10	가 족 의 복 ( 남자용자켓 )	벌	100 %소가죽, 지퍼부착, 성인용크기 (중)
322-11	가 족 의 복 ( 여자용자켓 )	벌	100 %소가죽, 여자성인용, 크기 (중)
3522 의약품제조업			
352-01	신경계용약	100 T	아티반 (정당 1mg), 베오마진 (정당 2mg) 자율신경제 그린피아 (정당 100mg)
352-02	해열진통제	상자	1. 판피린 내복액 (20ml 30병) 2. 사리돈, 오파이린, 바랄진
352-03	호흡기계용약	병	1. 지미신 (150ml) 2. 오토텐트리제주 1cc X 10 Ample
352-04	순환기계용약	Ample 100 T 2ml X 50 A	1. 에시드라이 스투게론 2. 베오크린-엠주 (Neopbillin-M)
352-05	소화기계용약	100 T 병	1. 당의정, 베스타제, 퀘스탈 2. 까스활명수 (병당 50ml), 까스명수 (병당 75mg)
352-06	비뇨생식기 및 항문용약	22 T	린더올 2.5
352-07	감각기판용약	7 ml	1. 안약 (산스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격
352-08	비 타 린 제	100 T 100 T	2. 유신교약 내복정 빼콤정 비타민, 아로나민 ( 50mg 당의정 )
352-09	홀 문 체	100 T 100 C	1. 투신파질홀문제, 에리솔론정, 호스타코틴 표정 2. 혼합 홀문체 ( 비나풀로 ).
352-10	자 양 강 장 제	병 10 병	1. 5 % 포도당주사액 ( 1,000cc ) 2. 드링크류병당 100ml, 박카스 - D, 알프스 - D
352-11	혈 액및 채액용약	1,000 ml	포도당 5 %함량, 중외 ( 생리식염액 ), 마크로텍스디
352-12	화 학 요 범 제	100 T 100 T	1. 설파제정당 ( Sulphame thoxazole ) 400mg 박트림, 셈트린 2. 항결핵제 ( 에탐부톨정당 400mg ), 국제에 탐부톨, 마이암부톨제피 정
352-13	항 생 물 질 제	100 C	1. 250mg 「 캠술 」 펜브렉스칼셀, 테라싸이크린칼셀

품목번호	품 목 명	단위	품 질 및 규격
352-14	기생충 구충제	1 Vial 5 T	2. 용성황산카나마이신주 1g 정당 100mg ( Mebendazole ) 비탁 스, 텔비스
352-15	외피용약	20 mg	안티푸라민
352-16	창종치료제	100 T	마로닌정 50mg
352-17	생물학적제제	100 ml	알부민 25% 주 라이루젠

부록 III      도량형 단위환산표

〈 표 1 〉      길      이

	寸	尺	m	in	ft	yd
1 치 (寸)	1	0.1	0.03030	1.1930	0.09941	0.03313
1 차 (尺)	10	1	0.30303	11.930	0.99419	0.33139
1 메터 (m)	33	3.3	1	39.370	3.2808	1.0936
1 인치 (in)	0.8382	0.08382	0.0254	1	0.08333	0.02777
1 퀘트 (ft)	10058	1.0058	0.3048	12	1	0.33333
1 야드 (yd)	30175	3.0175	0.9144	36	3	1

〈 표 2 〉      面      이

	平方尺	坪	m <sup>2</sup>	in <sup>2</sup>	ft <sup>2</sup>	yd <sup>2</sup>
1제곱자 (平方尺)	1	0.02777	0.09182	142.33	0.98842	0.10982
1 평 (坪)	36	1	3.3057	5123.9	35.583	3.9536
1제곱미터 (m <sup>2</sup> )	10.89	0.3025	1	1550.0	10.763	1.1959
1제곱인치 (in <sup>2</sup> )	0.007025	0.0001951	0.0006451	1	0.006944	0.0007716
1제곱퀴트 (ft <sup>2</sup> )	1.0117	0.02810	0.09290	144	1	0.1111
1제곱야드 (yd <sup>2</sup> )	9.1054	0.25292	0.83612	1296	9	1

〈表3〉 부 페

	台	升	$m^3$	$\ell$	英 gallon	美 gallon
1 푸 (台)	1	0.1	0.0001803	0.18039	0.03968	0.04765
1 되 (升)	10	1	0.001803	1.8039	0.39681	0.47654
1세제곱미터 ( $m^3$ )	5543.5	554.35	1	1000	219.97	264.27
1리터 ( $\ell$ )	5.5435	0.55435	0.001	1	0.21997	0.26417
1갈론 (gallon 英)	25206	2520.6	0.004545	4.5459	1	1.2009
1갈론 (gallon 美)	20984	2098.4	0.003854	3.7854	0.83270	1